



고양 금정굴 사건

【결정사안】

고양경찰서장의 지휘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지역과 파주 일부지역에서 거주하던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집단총살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소재 금정굴에서 집단총살 당하였다.

2. 위 사건의 경위를 보면, 국군의 고양·파주지역 수복 이후, 경찰은 지역주민 중 인민군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와 부역혐의로 행불 또는 도피한 자의 가족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고양경찰서로 이송한 다음, 3~7일간의 조사를 거쳐 10월 9일부터 한 번에 20~40여 명씩 금정굴로 끌고 가서 총살하고 암매장하였다. 이 과정에 고양경찰서 관내 경찰과 20여 명의 태극단·치안대 등 경찰보조 인력이 가담하였다. 금정굴 현장에서는 5인 1조의 경찰관 2개조가 희생자 5명씩을 굴 방향으로 무릎을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본 사건의 전체 희생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포함하여 최소 153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고산돌(다-253), 최의현(미신청), 유해진(다-805), 한복영(다-804), 허정임(미신청), 정한희(다-578), 정대철(다-578), 정영학(다-574), 김석권(다-806), 이봉린(다-577), 박순조(다-432), 박순환(다-432), 한창석(다-3446), 서상용(다-249), 서병철(다-249), 서병욱(다-2317), 이규봉(다-278), 이정례(다-278), 윤영규(다-2312), 안희준(다-274), 이기철(다-6521), 김광제(다-6958), 박근식(다-2313), 박인식(다-2313), 권학길(다-6269), 최종석(다-260), 박희문(다-378), 김용남(미신청), 김영선(다-2816), 전옥자(다-2816), 이돌섭(다-275), 김천홍(다-250), 김영환(다-254), 김재환(다-254), 유희철(다-252), 안점봉(다-247), 안형노(다-247), 안상노(다-247),

안용노(다-576), 이용우(다-261), 최재옥(다-259), 최연(다-258), 최담(다-258), 박만협(다-248), 조병호(다-6065), 김진섭(다-6065), 김명산(다-6782), 방용섭(다-6782), 김만성(다-6782), 김진홍(다-357), 심기만(다-279), 심우현(다-279), 심준섭(다-279), 유필준(다-277), 노인성(다-257), 심재천(다-255), 노춘석(다-256), 홍기원(다-6982), 김상국(다-280), 김호연(다-276), 서정희(다-575), 김대봉(미신청), 이봉훈(미신청), 이태우(다-7822), 이병희(다-251), 이금현(다-3429), 장기연(다-6827), 장석용(미신청), 장기철(미신청), 박중원(다-2315), 박상하(다-2315), 김순동(다-245), 정씨(다-576), 안종건(다-576), 안복례(다-576), 채기동(다-899) 등 76명이다.

4.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로서, 이 중에는 북한 점령기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도 일부 있으나,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혐의자 가족과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가 8명, 여성이 7명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양시 중면과 송포면의 주민들이 주로 희생되었다.

5. 본 사건의 가해책임은 고양경찰서(서장 이무영)에 있고,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으며 보조역할을 수행한 치안대·태극단에도 간접책임이 있다.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은 희생자들의 연행·구금·이송 및 총살을 감독·집행하였다. 치안대는 우익단체인 대한청년단·대동청년단·태극단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경찰의 치안보조 조직으로서 고양경찰서의 지휘 아래 있었다. 특히 태극단은 고양경찰서 직할파출소에 본부를 두고 부역혐의자 연행, 고양경찰서 유치시설의 감시, 희생자들의 금정굴 처형장소 이송 등을 실행하였다. 본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일차적인 지휘·명령계통은 고양경찰서 → 경기도 경찰국 →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한편으로 전시 계엄령 하에서 경인지구 계엄사령부가 모든 상황을 통제·감독하고 있었다. 본 사건에서 이들 상급기관의 사건 인지, 묵인 및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고양경찰서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확인·선별 절차나 적법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사형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었고,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부역자 처리를 금지하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양경찰서는 본 사건 관련 희생자들을 처형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으려 간다고 속이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수복 직후 부역자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중앙에 설치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50년 11월 2일 본 사건 관련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치안대원들을 체포한 직후 금정굴에서



처형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이승만 정부는 본 사건의 진행 중에 이미 그 위법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본 사건은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을 불법으로 집단 총살한 사건이었다. 비록 사건 관련 희생자들 가운데 일부가 부역자 혹은 부역혐의자였다고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 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사건 이후에도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생계의 터전인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 또한 연좌제에 따라 취업의 권리가 제한되고, 요시찰인으로 분류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8. 진실화해위원회는 호적 정정조치를 비롯하여 고양 금정굴사건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사과, 임시 보관 중인 유해 영구봉안, 평화공원 설립과 위령시설 설치, 전시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 정비, 잘못된 기록의 수정 및 진실의 역사반영, 역사관 건립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다-245외 52건 고양 금정굴사건

【신청인】 김용성 외 46명

【결정일】 2007. 6. 26.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김용성 외 46명¹⁾이 ‘고양 금정굴에서 민간인이 집단희생된 사건’²⁾(이하 금정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는 예비조사, 2006년 4월 25일 조사개시 결정, 조사계획의 수립 후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신청서의 접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1) 신청인 박기송이 2건, 서병규가 4건, 심기호가 2건, 이강남이 2건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제출하였음.

2) 2006년 4월 25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유형과 상관없이 고양시와 파주시 전 지역의 민간인집단희생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개시결정을 내렸음. 처음에는 사건명을 “고양 금정굴사건”으로 하였으나 이후 “고양·파주지역 민간인희생사건”으로 하여 병합하였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의 차별성이 드러남에 따라 다시 “고양 금정굴사건”으로 분리하였음.

〈표 1〉 신청서 접수현황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비 고
1	'05. 12. 19.	245	김용성	김순동(남, 38세)	태극단원에 의해 끌려 감
2	'05. 12. 19.	247	안종호	안점봉(남, 59세) 안형노(남, 35세) 안상노(남, 21세)	일가족 몰살 후 재산을 빼앗김
3	'05. 12. 19.	248	박헌수	박만협(남, 27세)	치안대 최○○에 의해 끌려 감
4	'05. 12. 19.	249	서병규	서상용(남, 45세) 서병철(남, 24세) 서병욱(남, 18세)	일산리 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5	'05. 12. 19.	250	김국환	김천홍(남, 48세)	부역혐의자의 친인척이라하여 희생당함
6	'05. 12. 19.	251	이용덕	이병희(남, 27세)	지주와 갈등
7	'05. 12. 19.	252	유성채	유희철(남, 29세)	용산철도기지에서 근무
8	'05. 12. 19.	253	고준일	고산돌(남, 46세)	부역혐의자의 친인척이라하여 희생당함
9	'05. 12. 19.	254	김기조	김영환(남, 27세) 김재환(남, 28세)	덕이리 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10	'05. 12. 19.	255	심재서	심재천(남, 25세)	도촌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11	'05. 12. 19.	256	노병길	노춘석(남, 25세)	도촌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12	'05. 12. 19.	257	노영석	노인성(남, 27세)	도촌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13	'05. 12. 19.	258	최명애	최 연(남, 27세) 최 담(남, 22세)	태극단에 의해 끌려 감
14	'05. 12. 19.	259	이경순	최재욱(남, 24세)	최연, 최담과 함께 희생당함
15	'05. 12. 19.	260	최승순	최종석(남, 30세)	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16	'05. 12. 19.	261	이복형	이용우(남, 26세)	덕이리 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17	'05. 12. 20.	274	안양준	안희준(남, 26세)	중면사무소에서 근무했음
18	'05. 12. 20.	275	이한섭	이돌섭(남, 24세)	집 마당에서 인민재판이 있었음
19	'05. 12. 20.	276	김동철	김호연(남, 23세)	내유리 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20	'05. 12. 20.	277	유병선	유필준(남, 36세)	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21	'05. 12. 20.	278	이종민	이규봉(남, 50세) 이정례(여, 16세)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됨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비 고
22	'05. 12. 20.	279	심기호	심기만(남, 24세) 심우현(남, 26세)	보도연맹원이었다는 이유로 희생됨
23	'05. 12. 20.	280	김상길	김상국(남, 21세)	
24	'05. 12. 23.	357	김광원	김진홍(남, 25세)	
25	'05. 12. 29.	378	박기송	박희문(남, 27세)	
26	'06. 1. 4.	432	박화송	박순조(남, 미상)	신청인 성장 후 희생사실을 알게 됨
27	'06. 1. 12.	574	정영무	정영학(남, 20세)	경찰관과의 개인적 갈등이 원인
28	'06. 1. 12.	575	서영석	서정희(남, 35세)	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29	'06. 1. 12.	576	안종금	안용노(남, 27세) 정 씨(여, 53세) 안종건(남, 19세) 안복례(여, 17세)	부역혐의자의 인척이라고 희생당함
30	'06. 1. 12.	577	이병순	이봉린(남, 48세)	생존자 이경선 구출
31	'06. 1. 12.	578	정대영	정한희(남, 58세)	경찰에 의해 연행 됨
32	'06. 1. 16.	804	한정분	한복영(남, 32세)	희생자 본명이 한봉예가 아님
33	'06. 1. 16.	805	유길자	유해진(남, 32세)	치안대 박○○, 서○○에게 연행 됨.
34	'06. 1. 16.	806	김정학	김석권(남, 24세)	부친 김상용이 처형현장 목격
35	'06. 1. 20.	899	채봉화	채기동(남, 36세)	일산치안대 곽○○에 의해 연행 됨
36	'06. 3. 13.	2312	윤영옥	윤영규(남, 25세)	
37	'06. 3. 13.	2313	박규완	박근식(남, 40세) 박인식(남, 19세)	3일 동안 보초를 선 혐의로 희생됨
38	'06. 3. 13.	2315	서병규	박중원(남, 40세) 박상하(남, 18세)	희생자 도장 발굴됨
39	'06. 3. 13.	2317	서병규	서병욱(남, 18세)	일산치안대에 끌려 감
40	'06. 3. 13.	2318	서병규	서병숙(남, 21세)	1950. 12. 20.경 자수 후 행방불명 됨
41	'06. 3. 13.	2816	전왈성	김영선(여, 57세) 전옥자(여, 17세)	연행장면을 신청인이 목격함
42	'06. 4. 5.	2817	심기호	심준섭(남, 26세)	치안대에 의해 끌려 감
43	'06. 4. 5.	2819	박기송	박희문(남, 27세)	378호 재접수

연번	접수일	사건번호	신청인	희생자	비 고
44	'06. 5. 4.	3429	이의모	이창영(남, 53세) 이금현(여, 46세)	이창영은 연행 후 재판을 받았다고 하나 확인 안됨
45	'06. 5. 8.	3446	어분순	한창석(남, 49세)	치안대 이○○에 의해 끌려 감
46	'06. 10. 19.	6065	조한복	조병호(남, 49세)	보도연맹가입
47	'06. 10. 25.	6269	권희숙	권학길(남, 23세)	희생자의 돌림자 이름은 권혁길임
48	'06. 11. 2.	6521	이강남	이기철(남, 42세)	호국군이었음
49	'06. 11. 13.	6782	정대용	방용섭(남, 20세)	덕이5리
50	'06. 11. 14.	6827	장성자	장기연(남, 27세)	도내리
51	'06. 11. 16.	6958	김동환	김광제(남, 24세)	일산리
52	'06. 11. 20.	6982	이강남	홍기원(남, 20세)	일산금융조합에서 근무
53	'06. 11. 27.	7822	이기성	이태우(남, 50세)	고양경찰서로 자수함

2. 신청인 주장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38선 이남 대부분 지역이 인민군에게 점령되었다가 9·28 수복이 이루어진 후 한 달여에 걸쳐 고양·파주 일대에서 경찰과 우익단체들이 인민군 점령하 인민위원회 등에 협력한 부역자³⁾를 색출한다는 명분아래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을 불법 연행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양 금정굴⁴⁾로 끌고 가 처형·암매장하였다.

고양지역의 경찰, 치안대는 수복 직후부터 태극단 등 우익단체원들을 동원하여 부역자로 지목된 주민들을 연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상당수는 연행과정 중 거주지와 인근 지역에서 곧바로 살해당하였다. 나머지 부역혐의 주민들은 각 마을의 창고에 수감되었다가 일부는 총살당하고 일부는 고양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고양경찰서는 연행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그 옆 농협창고를 유치장으로 사용하였다. 경

3) '부역자'는 인민군점령기간 동안 인민군의 통치행위 전반에 협력한 자를 말한다. 1950. 12. 1. 법률 제 157호로 제정된 「부역행위특별처리법(附逆行爲特別處理法)」 제1조는 “본법은 역도가 침점한 지역에서 그 침점기간중 역도에게 협력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 특별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 하였다. 한편 『경찰10년사』에는 부역자를 “북한괴뢰의 침공으로 인한 적치3개월간에 금(巨)하여 적에 아부, 혹은 강압으로 부득이 부화뇌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역행위를 “단기 4283년 6월 25일 조효(早曉) 북한괴뢰집단의 침구(侵寇)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 즉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적의 만행에 가담한 행위”로 규정하며 “부역행위에 관한 죄에 대한 처벌법규가 곧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라고 하고 있다. (『경찰10년사』, 내무부치안국, 1958, 267쪽)

4) '금정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산208-10, 황룡산(134.5m)이 고봉산과 이어지는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74m 야산에 위치한 수직폐광굴을 말한다. (『일산금정굴 시굴조사 보고서』, 2005. 9, 19쪽)



찰은 연행한 주민들에게는 물 한모금도 주지 않았으며, 이들은 연행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전해주는 밥을 나누어 먹었다. 연행된 주민들은 부역협박자의 행방 및 부역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매일 고문을 당했으며, 3일내지 7일정도의 조사를 거친 후 대부분 금정굴로 끌려가 희생당했다.

한 달 동안의 무차별 총살이 중단된 것은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개입 때문이었다. 당시 고양경찰서장이었던 이무영은 체포를 피해 도망쳤고, 경찰, 치안대장 등 1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으며, 그 후 이○○ 등 치안대원은 사형선고를 받았다.⁵⁾

발굴된 유골의 수습에 대해 대부분의 유족들은 금정굴 현장주변에 합동묘를 조성하여 모시고, 위령설치물 및 공원을 조성하여 평화와 통일의 교육장으로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⁶⁾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2005년 12월 19일부터 2006년 11월 27일까지 김용성 등 신청인으로부터 53건의 금정굴 사건 관련 진실규명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 제2조 1항 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사건의 규모, 지역별 형평성, 사건 유형에 따른 대표성, 접수순서에 따른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2006년 4월 25일 43건, 2006년 6월 13일 2건, 2007년 1월 16일 8건 등 모두 53건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과 희생규모, 희생과정, 가해의 과정과 각 주체들의 역할,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이후 유족의 피해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III. 조사의 방법 및 경과

1. 신청인 및 참고인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5월 7일까지 신청인 42명⁷⁾과 피해 측 참고인 34명을 조사하였다.

5) 유족들은 1998년 진상규명활동 중 참고인 정○○으로부터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개입현장 목격담을 듣게 되었다.

6) 공원조성방안에 대해 ‘저건 빨갱이 공원이야’라고 할 것을 염려하는 신청인의 진술도 있었다. (김상길 진술, 2006. 6. 10. 진술서 10쪽)

7) 사건을 잘 모르는 유족이 신청한 경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친인척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신청인들을 별도로 면담하지 않았음. (신청인 유병선 대신 희생자 며느리 황주선, 신청인 서정희 대신 그 누나인 서영자, 신청인 박근식 대신 고모 박영숙, 신청인 이경숙 대신 사촌시누이 최진) 해외거주 등 개인사정으로 직접면담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참고인 진술과 자료조사로 대신하였음. (신청인 이복형의 경우)

〈표 2〉 피해 측 참고인 진술조사 현황

연번	성명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서영자	서정희의 딸	'06.6.6./ '06.6.15.	일산동 상점	진술 조서	치안대가 '그 종자를 다 죽인다'면서 동생을 업고 있던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이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세 식구는 살아남게 되었음.
2	박규완 모친	박근식의 며느리	'06.6.15.		면담 보고서	희생자의 제사일이 음력으로 9월 5일(양력 10월 15일)이며, 시어머니께서 밥을 해 날랐는데, 저녁때에 가져간 밥이 그대로 도로 나왔다고 함.
3	이진철	이창선의 아들	'06.6.22.		면담 보고서	희생자가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며, 꼭 금정굴에서 돌아가셨다는 확신도 없다고 함.
4	황주선	유필준 며느리	'06.6.22.		면담 보고서	고양경찰서에 1주일동안 있었으며, 밥은 아들이 가져다 줌
5	이순희	이봉훈의 딸	'06.6.26.		면담 보고서	이장 일을 보시다가 고양경찰서로 잡혀가셨음. 제사를 음력 9월 6일에 지내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날을 알고 있어 그 때 지내는 것으로 생각함.
6	박영숙	박근식의 딸	'06.7.8.	법곶동 자택	진술 조서	치안대가 희생자의 부친에게 땅을 주면 빼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함.
7	이영재	이금현의 딸	'06.8.10.	위원회	진술 조서	땅까지 빼앗긴 것이 억울해서 면장을 찾아갔으나, 쌀 두가마니를 받는데 그침.
8	김양원	새벽구덩이사건	'06.8.11.	덕양구청	출장 보고서	주요목격자와 가해혐의자의 신원을 확인함.
9	김○○	박순조의 처남	'06.8.22.	일산동 자택	진술 조서	희생자가 남로당을 피해 있던 중 누이 김의숙과 만났으며, 그 후 일산의 삼정부락으로 와서 양복점을 하게 되었음.
10	이윤성	유골조사	'06.8.23.	서울대병원	출장 보고서	DNA 감식 등 유골감정에 대하여 조사가 가능하긴 하나 유골이 수 천 개이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듦.
11	김영필	박만협외 처남	'06.9.1.	고봉동 자택	진술 조서	희생자 박만협은 그냥 착했던 사람으로 빨갱이는 아니었음.
12	김○○	박순조 처남	'06.9.7. '06.9.12.		면담 보고서	국군에 의해 수복 된 후 육군정보학교에 가기 전까지 태극단원으로서 치안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누구든 돌아다니다 잘 못 걸리면 금정굴로 끌려갔음. 나이가 어려 경찰의 지휘를 직접 받아 본 적은 없었음.



연번	성명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3	윤○○	최의현의 8촌제수	'06.9.11.		면담 보고서	8촌 최의현은 6·25때 행방불명되었으며, 금정굴사건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음.
14	최성만	최의현의 아들	'06.9.11.		면담 보고서	최의현이 고양경찰서로 끌려가자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돌려 서명을 받았으나, 이를 전하기도 전에 처형당했음.
15	권태윤	이금현의 사위	'06.9.13.		면담 보고서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되어 재판은 서울에서 받았으며, 장인 이창영은 대구교도소에서 사형당했다고 알고 있음.
16	김영자	귀일안골 희생유족	'06.9.14.		면담 보고서	수복 후 희생된 분들은 부친 김현세, 모친 차제순, 오빠 김봉규, 김태규 등 4명이며, 그 외에도 큰 집 식구들 등이 희생당했는데, 모두 몇 명인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음.
17	황은호	현천리 희생유족	'06.9.21.		면담 보고서	먼 친척인 황운손, 황재덕 두 분 다 화전에서 끌려왔음.
18	장○○	보도연맹원	'06.10.13.	성사동 자택	WAV 녹취록	장기웅이 좌익두목이었고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모르며, 당시 누가 죽어도 말도 못하고 살았음.
19	이병희	구산리 목격	'06.10.24.	북가좌동 사무소	WAV 녹취록	부친의 희생사건 후 1951년 1월 경 가좌파 출소에서 치안대 피○○이 쓴 칼빈 총에 맞았으나, 가족들의 도움으로 목숨은 건짐.
20	김태식	김명산의 아들	'06.11.9.		면담 보고서	나이가 어려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며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며, 이제 와서 다시 들춰 내고 싶지 않음.
21	장석균	장석용의 동생	'06.11.13.		면담 보고서	장석용, 장기연, 장기철이 금정굴에서 희생된 사실이 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전화를 받기도 힘든 형편임.
22	김진웅	김만성의 아들	'06.11.13.		면담 보고서	누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가 희생당한 것이며, 지금 와서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함.
23	이춘열	박순조, 박순환 형제희생	'06.11.13.		면담 보고서	사건당시 일산1구장이었던 이범진의 아들 이영재와는 2000년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그 때 이영재는 천주교회 앞에서 양복점을 하던 외사촌의 매형 형제가 금정굴에서 함께 희생당했다고 하였음.
24	김병순	김광제의 형수	'06.11.15	탄현동 자택	WAV 녹취록	밭일을 하다가 희생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같은 날 위 희생자와 형 동생하는 사이인 형사 김○○으로부터 희생사실을 들었음.

연번	성명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25	정○○	보도연맹원 유족	'06.11.23	행주내동 자택	출장 보고서	형 정○○은 1950년 6월 26일 아침에 서울로 간다며 갔으며, 그 후로 아직까지 행방을 모름. 9·28 수복 후 마을에서 있었던 '맨돌마을 63명 희생사건'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으나, 누가 희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름.
26	안영식	강매리 주민	'06.11.24		면담 보고서	인민위원회 아래에서 희생자 이태우의 중간 역할로 여러 주민이 목숨을 건진 일이 있었으며, 국군수복 후에도 희생자의 고양경찰서 자수로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음.
27	이○○	타공결사대	'07.1.5.	삼송동 자택	WAV 녹취록	타공결사대가 정식명칭이고 신문의 '북한산 빨치산'은 수사기관에서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만든 것 같다고 함. 태극단과는 국가유공자 모임에서 만남.
28	유정자	유희철의 딸	'07.2.15		면담 보고서	희생자는 해방 후 용산철도기지에서 근무하였으며, 국군 수복 후 의용경찰, 치안대라고 불리던 사람들에게 의해 덕이 3거리에서 끌려갔음.
29	김중배	적대세력 희생유족	'07.2.22.	성석동 자택	WAV 녹취록	다니지 않으면 지목을 당하므로 대동청년단에 다녀야 했음.
30	김춘기	김인환의 처	'07.2.23.	산남리 자택	WAV 녹취록	치안대장 이○○에 의해 부역혐의자 가족들이 그의 집 창고에 감금되었다가 심학산 한강변에서 모두 희생당했음.
31	최진	최연의 여동생	'07.4.20.	중산동 자택	WAV 녹취록	최연은 수복 직후 치안대에 연행되었으며, 최담은 그 다음날에 자수하였음. 최연, 최담, 최재옥 모두 같은 날에 금정굴에서 희생되었음.
32	이경용	서정희의 처남	'07.4.27.	사리현동 자택	WAV 녹취록	치안대장 홍○○에 의해 80여명의 부역혐의자들이 금정굴에서 희생당했다고 알고 있음.
33	이기석	이태우의 조카	'07.4.27	이기석 사무실	출장 보고서	인민군 점령하에서 이장일을 본 것 때문에 고양경찰서로 끌려갔음.
34	안봉이	덕이리 희생목격	'07.5.7.	하남시 자택	WAV 녹취록	치안대 최○○에 의해 행방불명된 남편의 행방을 말하라며 덕이리 창고로 끌려가 하루 동안 매를 맞음.



2. 가해혐의자 및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 5월 22일까지 가해혐의자 및 참고인 20명을 조사하였다.

〈표 3〉 가해 측 참고인 진술조사 현황

연번	대상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	이○○	지도면사무소 근무	'06. 8.17.	신평동 자택	진술 조서	신평리치안대 대장은 최○○이라는 대한청 년단장이었으며, 이 사람의 고발로 희생자 이병희가 끌려감.
2	황○○	태극단 행주지단	'06. 9.20.		면담 보고서	국군 수복 당시 100여 명 가량을 생포하여 치안대본부로 옮겼으며, 당시 경찰관의 신분으로 치안활동을 한 것이었음.
3	공○○	태극단 현천지단	'06. 9.21.		면담 보고서	해병대가 와서 화전으로 와서 들어왔을 때 치안대들이 부역혐의자들을 이미 잡아다 났음. 해병대는 도착하자마자 리인민위원장을 잡아다 났느냐고 하면서 리인민위원장 이었던 황재덕을 그 자리에서 총살하였음.
4	이○○	태극단 현천지단	'06. 9.27.	현천동 자택	출장 보고서	파키슨병으로 말이 불편하여 만나기 곤란 하므로 면담에 응할 수 없다고 함.
5	강○○	청년방위대	'06. 9.29.	오금동 자택	WAV 녹취록	서울 영천치안대 활동 중 인민위원회 서류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붙들려다가 구타를 하는 모습을 목격함.
6	이○○	청년방위대	'06.10.11.	구산동 자택	WAV 녹취록	죄 없는 사람은 미리미리 죽고, 죄가 많은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높은 데로 끌려가서 취조 받고 하는 중에 정부에서 죽이지 말라고 했음.
7	이○○	태극단 송포지단	'06.10.18.	구산동 자택	WAV 녹취록	가짜리 창고에 200여 명이 갇혀 있었으며, 조사 후 강변에서 희생되었음.
8	정○○	경찰관	'06. 9.18. '06.10.28. '06.10.31.	성석동 자택	WAV 녹취록	의용경찰과 태극단은 따로 있었음. 의용경찰은 민보단출신들로 월급은 안 받았고, 나중에 경찰이 되지는 않았음.
9	조○○	태극단 수색지단	'06.12. 6.	수색동 사무소	WAV 녹취록	9월 28일에 해병대가 들어왔는데, 능곡서부터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인민위원회 일을 하던 사람들이 조사고 뭐고 없이 희생 당했음.

연번	대상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0	이○○	태극단 별동대장	'06.12.12.	수색동 자택	WAV 녹취록	석○○이 장교인지 경찰관인지 원지 모르 겠으나 단장 얘기가 석○○이 다 위임했 다고 했음. 10월 9일 금정굴에서 “끓어 앉 아” 그러더니 경찰관들이 등 뒤에서 쏘는 것을 목격했음.
11	김○○	태극단 능곡지단	'06.12.15.	반탁반공 학생운동 기념사업회	WAV 녹취록	10월 9일 현장을 목격했는데 당시 함께 간 태극단원이 한 20명 되었으며, 경찰이 데려가라니까 금촌 쪽으로 가는 줄 알고 호위하고 따라갔음. 아래쪽에 있어서 직접 죽이는 것은 보지 못했음.
12	백○○	태극단 광탄지단	'06.12.21.	광탄면 자택	WAV 녹취록	구덩이를 주욱 파 놓았으니까 붙잡은 사람 들은 많이 죽었음
13	이○○	태극단 교하지단	'07. 1. 9.	산남리 자택	WAV 녹취록	고양군 치안대장은 이○○ 대한청년단 고 양군단장이었음.
14	이○○	태극단장	'07. 1.17.	도곡동 자택	WAV 녹취록	고양경찰서에 갇혀 있던 사람들 90명은 태극단이 연행한 자들임. 미처 도망가지 못한 용공분자들을 잡아서 인계를 해 주었 으며, 처형은 하지 않았음.
15	유○○	70년 고양경찰서 근무	'07. 4.19.	고양경찰서	면담 보고서	고양경찰서 근무자의 금정굴 처형행위에 대해 할 말이 없으며, 월북자 등 보호관찰 자가 송포지역에 특히 많았던 것을 기억함.
16	김○○	경찰관	'07. 5. 4.	기독교회관 407호	WAV 녹취록	전남 곡성경찰서에서 근무하다 북한군에게 잡혀 광주교도소에서 감금되어 있던 중 UN군 수복으로 풀려났으나, 그 후는 기억 나지 않음.
17	김○○	경찰관	'07. 5. 9.	법무법인 시민	WAV 녹취록	신도지서에 근무하다 전쟁을 맞았으며, 피 난하지 못해 고향인 웅진군에 갇혀 있던 중 국군수복으로 풀려 남. 특훈생으로 재 교육 후 산청빨치산토벌대로 활동함.
18	김○○	경찰관	'07. 5.10.	위원회	진술 조서	국군수복 후 고향 안성에서 부역자 취조활 동을 하다가 고양경찰서로 복귀했으며, 복 귀 후 2~4차례의 총살이 있었는데 진술 인은 동원된 바 없었음.



연번	대상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내용
19	이O	대동청년단원	'07. 5.15.	성석동 자택	WAV 녹취록	국군 수복 후 벽제면 치안대 홍OO에 의해 부역혐의자 및 가족들이 안골에서 희생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희생자 홍기원이 일산치안대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했음.
20	김OO	경찰관	'07. 5.22.	자택	출장 보고서	보훈대상은 맞으나 경찰관이었던 적이 없으며, 고양경찰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음.

3. 자료 조사

국가기관 소장 관련자료는 국가기록원, 경찰청과 산하기관, 문화관광부, 국방부, 대구교도소 등에서 조사·입수하였으며, 민간 측 자료는 금정굴사건희생자유족회, 고양시민회, 고양시청 등의 협조로 『고양시사』(1987, 2005), 『태극단투쟁사』, 금정굴공대위 보고서등 문서자료와 MBC뉴스, SBS뉴스, 오마이뉴스, MBC PD수첩, 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전쟁』, 유족회 녹화테이프 등 동영상자료를 입수하였으며, 동아일보 1950년 10월 ~ 1951년 2월,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간행 빨치산자료집 신문편 등을 조사하였다.

사건 관련 기존보고서로 『고양시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감정결과 중간보고서』(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 1998. 12. 8.), 『고양시 일산금정굴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경기도의회, 2000.), 『일산 금정굴 시굴조사 보고서』(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5. 9.)를 조사하였다.

국가기관 소장 관련자료로 4283(1950). 12. 22. 서울지방법원 판결 형공 제1838호, 김OO 수용자신분장, 이OO 수용자신분장, 피OO 수용자신분장, 안OO 수용자신분장, 서OO 수용자신분장, 『대구교도소 1950, 1951, 1952년 재감인명부』, 『대구교도소 1951년 군예치자인명부』, 경기경찰청 인사자료(1950~1951)를 열람하였으며, 일부 사본을 입수하여 조사에 활용하였다. 이 외에 유족회 제출 녹음·동영상자료, 『고양군지』(1987), 『좌익사건실록 1~11』(대검찰청수사국) 등 일반 단행본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표 4〉 본 조사 전 동영상 및 녹취 자료(사전조사 포함)

연번	진술인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⁸⁾ 형태	주요 진술내용
1	김영란	유필준의 처	'98.1.17.	자택	'07.3.27 녹취록	비료를 준다고 해서 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국군수복 후 국군환영대회에 나갔다가 가짜리 창고로 끌려감.
2	노근용	노춘석의 동생	'98.1.17.	자택	'07.3.27 녹취록	들어간 밥이 그대로 도로 나와서 희생사실을 짐작했음.
3	박영숙	박근식의 딸	'98.1.17.	자택	'07.3.28 녹취록	6형제중 한 명이 의용군으로 끌려 감.
4	박이례	노인성의 처	'98.1.17.	자택	'06.12.16 녹취록	대화리 인기라는 자가 비료를 준다고 하여 보도연맹에 든 것인데 이 때문에 희생당함.
5	서병규	서상용의 아들	'98.1.17.	자택	'06.12.6 녹취록	1950년 10월 9일 아침 10시경 희생자들과 함께 창고에서 사람들이 묶여 나와 금정굴로 끌려갔으며, 11시부터 그 쪽에서 나는 총소리를 들었음.
6	송기순	이병희의 처	'98.1.17.	자택	'06.12.6 녹취록	신평리에서 세 명이 들어갔는데 잘 아는 한 사람이 풀려나와 말하기를 희생자가 새벽 4시경 나가더니 안들어왔다고 하였으며 도장이 발굴되었음
7	심기호	심기만의 동생	'98.1.17.	자택	'07.3.27 녹취록	도촌사람들이 잡아갔으며 그 마을 가정집에 감금되어 있다가 경찰서로 넘겨졌음
8	손금연	금정굴연행 목격	'98.2. 7.	자택	'07.4.6 녹취록	주민들을 새끼로 엮어매서 끌고 갔는데 대부분 남자였고 여자는 얼마 없었으며 금정굴로 올라간 후 “따르르”하는 총소리를 들었음
9	이경순	최재옥의 처	'98.2. 7.	자택	'07.4.5 녹취록	북한군 점령 후 교사생활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끌려갔으며 밥을 가지고 갔다가 처형을 위해 풀려나오는 주민들을 목격함
10	이계선	이봉린의 처	'98.2. 7.	자택	'07.4.4 녹취록	1950년 10월 9일 40여 명이 경찰과 태극단에 의해 금정굴로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희생자가 연행대열의 끝에 있었음
11	황두섭 부부	금정굴연행 목격	'98.2. 7.	자택	'07.4.4 녹취록	금정굴 현장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중산 사람이었음
12	고준일	고산돌의 아들	'98.2.14.	자택	'07.4.9 녹취록	전쟁 중 행방불명된 사촌 조카들을 찾아내라며 고양경찰서로 끌려갔으나 어느 날 밥을 받지 않은 후부터 행방을 알 수 없었음

8) 본 보고서의 녹취록은 모두 조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 중 입수한 비디오테이프는 mpg파일로 전환하여 보관하고 있다.



연번	진술인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⁸⁾ 형태	주요 진술내용
13	유해옥	유해진의 동생	'98.2.14.	자택	'07.4.9. 녹취록	수리조합에서 일하던 김태현이 희생자가 금정굴로 끌려가던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듣고 희생사실을 짐작함.
14	최진	최담의 동생	'98.2.14.	자택	'07.4.17. 녹취록	수복이 되던 날 저녁에 태극단원 10여 명이 총질을 해대며 들이닥쳤으며, 최담은 당일 도망했으나 다음날 자수했음.
15	채봉화	채기동의 딸	'98.2.27.	자택	'07.4.21. 녹취록	북한군 점령아래에서 쌀을 걷어 준 일이 있었으나, 이 보다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손씨 집안에서 일산치안대에 고발하여 끌려감.
16	허구례	허정임의 언니	'98.2.27.	자택	'07.4.30. 녹취록	오빠들이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였는데, 희생자도 수확을 거드는 등의 활동을 했으며, 그 후 피난을 갔다가 수복 후 돌아오던 중 끌려감.
17	한정분	한복영의 딸	'98.2.27.	자택	'07.4.30. 녹취록	백석리 인민위원회의 일을 보아 수복 직후 피신하였으며, 이 때문에 희생자의 부친이 끌려가 매를 많이 맞았음.
18	이한섭	이돌섭의 동생	'98.2.27.	자택	'07.4.30. 녹취록	집안의 먼 친척이 좌익을 했으며, 이 때문에 고발이 들어가 연행당했는데, 송포지서를 통해 고양경찰서로 끌려갔음.
19	김영모	김용남의 아들	'98.2.27.	자택	'07.5.1. 녹취록	희생자가 가좌리 치안대에 자수를 했으며, 고양경찰서로 끌려간 후 음력 9월 초 하루에 밥을 받지 않아 그날로 제사를 지내고 있음.
20	이정남	이금현의 딸	'98.2.27.	자택	'07.5.1. 녹취록	부친 이창영이 인민위원장을, 본인이 여성위원장을 지냈음. 유엔군이 들어와 바로 끌려갔으며, 본인은 서울 중부서로 끌려갔음.
21	정영수	정한희의 손자	'98.2.27.	자택	'07.5.1. 녹취록	경찰서에서 와 그 뒤를 따라 간 후 행방불명되었음. 금정굴에서의 희생사실은 모르나 고양경찰서로 끌려간 사실은 분명함.
22	김광원	김진홍의 아들	'00.3.19.	자택	'06.10.29. 녹취록	피신하라고 하자 “내가 안 죽으면 형이 죽어요” 하면서 갔으며, 잡아간 치안대장 중 한 명은 사형집행됨.
23	김춘기	김인환의 처	'06.3. 4.	자택	'07.1.26. 녹취록	원액이란 자에 의해 부역일을 보게 되었는데, 국군 수복 후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잡아갔음.
24	신광재	심학산사건 목격	'06.3. 4.	자택	'07.5.2. 녹취록	산남리 신씨일이 사건은 종이 주인 집안을 다 죽인 것이며, 태극단이 한 일은 아님.
25	신화자	산남리사건 유족	'06.3. 4.	자택	'07.5.2. 녹취록	치안대장은 이○○이었으며, 종은 백○○이었는데 일가족이 밤나무꼭짜기 개울로 끌려가 희생당했음.

연번	진술인	사건 관련성	진술일	진술 장소	진술 ⁸⁾ 형태	주요 진술내용
26	전알성	김영선의 아들	'06.3.12.	자택	'07.5.2. 녹취록	본인이 피신다니던 중 모친과 사촌동생이 끌려가 금정굴에서 희생당했으며, 그 후 본인도 잡혀 죽게 되었는데 치안대장 이○○이 살려 줌.
27	정○○	경찰관	'06.3.14.	자택	'07.5.2. 녹취록	고양경찰서 유치장은 고양경찰서장과 교무과장의 명령에 의해 출입이 가능했으며, 끌려 온 주민들은 모두 취조를 당했음.

4. 현장조사

신청인에 대한 진술조사와 함께 사건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여 사건 당시 각 희생자들의 1차, 2차 유치지와 금정굴로의 이송경로를 확인하였으며, 이미 발굴되어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보관 중인 유골 및 유물을 확인한 다음 유해수습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IV. 조사결과

1. 사건의 실재여부

가. 집단희생의 실재여부

먼저 금정굴 집단희생 사건⁹⁾의 실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우선 1995년 9월 금정굴 현장에서 153여구의 유골¹⁰⁾과 총살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M1, 칼빈 탄피, 연행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비비선¹¹⁾ 및 5개의 도장을 비롯한 희생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품들이 발굴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유족의 주장에 따르면 희생자 서병욱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성상업중학교 교복단추, 박중원의 도장, 이병희의 도장,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는 땀가죽¹²⁾, 회중시계¹³⁾가 발굴되어 금정굴에서 한국전쟁기 집단총살사실이 존재했으며 희생자들 일부가

9) 본 사건의 존재자체를 부인하는 주장도 있는데, 1993년 「고양신문」의 발행인 이○○은 “내 자신이 이곳에 누대를 살며 또한 6·25 잔악한 남침의 모습들을 체험한 자로서 그와 같은 일들(금정굴 집단희생)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데올로기 상황하에 어느 대치국가에서나 전쟁 속에서는 죽음이 있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1천~2천 학살주장은 거창 5백양민학살 사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인데 사실이라면 왜 지금껏 잠잠했단가”라며 금정굴사건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발행인의 편지, 『고양신문』, 1993. 10.)

10) 당시 발굴된 유골은 13년 전 발굴당시의 모습 그대로 서울대병원 법의학과에 보관되고 있다.

11) 뒤의 사진 참조.

12) 허정임은 머리숱이 적고 길이가 짧았다고 한다.(1998. 2. 27. 허구례증언, 2007. 4. 30. 녹취록 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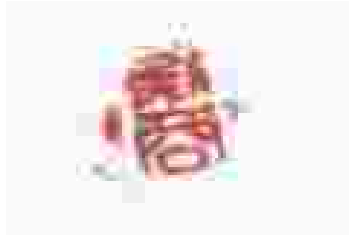
13) 이규봉, 김순동은 평상시에 회중시계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신청인들의 가족이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유품들을 통해 이 유해가 본 사건관련 희생자들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의 이운성 교수는 발굴된 유골 및 유품으로 보아 일정한 시기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해 벌어진 민간인 희생의 결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¹⁴⁾

한편 2002년 9월 14일 ‘태극단 단장 이장복외 회원 및 고양시 보훈협의회 회장 최실경외 회원 전체’ 명의의 유인물 ‘금정굴 피학살 양민 유족회의 부당한 주장과 요구를 반박한다.’¹⁵⁾에서 “경찰이 극렬 좌익분자 50~60명을 처형한 일은 있으나”라고 하여 경찰이 고양지역 부역협의를자를 집단총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 민간인 희생여부



한성상업중학교 교복단추



이병희 인영



박중원 인영

서울지방법원 선고 형공 제1838호 판결문에는 “평소부터 원한을 पो지하고 있던 한창석을 좌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라고 무고하여 사살케 하고”하여 사건발생 지점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인 한창석을 총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의 총살집행 현장을 목격한 태극단원 이○○의 진술, 유족 김상용의 목격담, 금정굴 아래부근에서 경찰들이 희생자들을 끌고 간 직후 총소리를 들은 태극단원 김○○, 주민 손금련, 정○○ 등의 증언, 처형 직후 금정굴 현장을 방문했던 유족 이병희의 진술, 금정굴사건 현장생존자 이경선의 증언, 고양경찰서 유치창고로부터 금정굴까지 이송당하는 희생자들을 목격한 주민 황두섭, 유족 김병순의 진술, 유치창고로부터 희생자들이 끌려나오는 장면을 목격한 유족 서병규, 이경순의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그리고 사건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연령대의 대부분 유족들이 희생자들이 수감된 직후 고양경찰서 유치장으로 밥을 날랐으며, 어떤 시점 이후부터 경찰 측이 밥을 받지 않게 된 일

14) 이운성 면담, 2006. 8. 23. 현장조사.

15) 이 유인물은 2002년 9월 14일 고양시의회가 ‘금정굴사건 희생자 위령사업 촉구결의안’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자, 이의 통과를 막기 위해 배포된 것이다.

로 미루어 연행자들이 희생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사건의 실재를 확인할 수 있다.

대개 집단희생사건 관련 유족들이 희생자의 사망신고를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적등본만으로 사망일자를 추정하기는 힘들지만, 일부 희생자의 제적등본은 희생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보면 희생자 최종석은 1950년 9월 10일(음력추정, 양력 10월 20일), 희생자 한창석은 10월 5일(연행 일과 일치), 희생자 윤영규는 10월 2일(연행 일과 일치), 희생자 서상용 서병철 서병숙 서병옥은 9월 28일(수복 일과 일치), 희생자 이봉린은 9월 28일(수복 일과 일치), 희생자 이돌섭은 9월 25일(수복 일 추정), 희생자 심재천은 10월 30일, 희생자 김재환은 9월 25일(수복 일 추정), 희생자 김영환은 9월 28일(수복 일 추정)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다. 소결

1995년 9월 금정굴에서 발굴된 유골과 유품은 한국전쟁 당시의 것임이 확실시되며, 그것들과 함께 태극단원 등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 희생자 수감시 경찰서에 밥을 나른 유족들의 증언, 사건 관련 문서자료를 종합할 때, 한국전쟁기에 고양지역에서 민간인 상당수가 금정굴에서 집단희생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2. 희생규모와 희생자의 신원

가. 희생규모

1950년 10월 중순경부터 고양경찰서¹⁶⁾ 유치장에서 근무했던¹⁷⁾ 경찰출신 정○○은 당시 고양경찰서 유치장과 길 건너 농협창고에 감금되어 있던 주민들 수가 대략 100~200명 사이였는데, 유치장에 20여 명, 농협창고에 100명 이상이 있었으며, 그 중 중요 인사는 유치장에, 일반 주민들은 농협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⁸⁾ 한편 당시 태극단원이었던 이○○은 고양경찰서 송포지서의 임시유치 창고에도 200여 명이 감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16) 1950년 10월 고양경찰서는 산하에 능곡지서, 신도지서, 벽제지서, 일산지서, 송포지서, 행주출장소 등 5개지서 1개 출장소가 있었다. (『고양시사 4권』, 2005, 382쪽) 그런데 1950년 6월 3일 고양경찰서장 성낙진경감이 경기도경찰국장에게 보낸 '직원 명부(성적순) 월례보고제출에 관한 건'에는 벽제지서(지서장 고해준 경위), 능곡지서(지서장 이봉천 경위), 신도지서(지서장 이병철 경위), 송포지서(독고성 경사), 원당지서(김형서 경사), 덕은출장소(정경석 경사), 행주출장소(김현두 경사), 고양출장소(이병삼 경사) 등 5개지서 3개 출장소가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17) 경찰관 정○○은 근무를 시작할 때 사리현리의 친구 김대봉의 모친이 고양경찰서로 잡혀간 아들의 소식을 알고자 방문한 일이 있었으며, 당시 김대봉은 유치장에 없었으므로 정○○은 그가 이미 희생되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조사결과 금정굴사건의 최초 발생일은 10월 9일부터로 판단된다.

18) 정○○ 증언, 2006. 3. 12. 녹취록, 사전조사시의 녹취임.



있다.¹⁹⁾ 이들 중 일부는 고양경찰서로 이송되어 금정굴에서 희생된 것이 확인되며, 일부는 한강변에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서울대병원에 보관되어 있는 유골·유품에 대해 「고양시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감정결과 중간보고서」(1998)는 “희생자 수가 최소한 153명 이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골의 추가 발굴 가능성에 대해 2005년 9월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는 “유해가 마지막으로 나온 약 13m 지점에서 2m 이상 더 지하로 내려갔을 때인 약 15m 지점에서 동벽에 바위가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바닥을 1m 길이 탐침봉으로 조사한 결과 토질은 굵은 마사토로 탐침봉의 목까지 쫓아 보았으나, 아무런 이상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당시 발굴에 참여했던 고준희는 “1995년 발굴 당시 유해는 8~13m 깊이 사이에 묻혀 있었으며, 바닥의 돌은 동벽을 파고 묻었으며 유해가 나오지 않아 이틀간 더 작업을 하였으나 마사토만 있었다”고 증언하였고 수복초기에 희생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중원²¹⁾의 도장이 유해의 바닥 아래 부분에서 발굴되었다는 증언에 근거하여 종합하면, 금정굴의 희생자들은 8~13m 깊이에 매장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더 이상 유골이 발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²²⁾

2006년 8월 23일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에 보관되어 있는 출토물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유선전화선(일명 ‘비비선’) 8자형(1인의 팔목을 묶었을 것으로 추정)이 140개, 88자형(2인의 팔목을 묶었을 것으로 추정)이 10개이므로 모두 160여명이 비비선에 묶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일부 증언에 따르면 비비선 뿐 아니라 밧줄로도 묶였기 때문에 최소 160명 이상의 희생자가 매장되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8자형 비비선〉



〈88자형 비비선〉

19) 이○○ 진술, 2006. 10. 18. 녹취록 5쪽.

20) 구산리 희생자 이범인의 아들 이병희가 한강변에서 희생자의 시신을 찾던 중 4~5군데의 시신무더기를 보았으며, 수백 명은 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이병희 진술, 2006. 10. 24. 녹취록 1쪽, 13쪽)

21) 1950년 10월 4일경 연행장면 목격됨.

22)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일산 금정굴 사굴조사 보고서』, 2005. 9.,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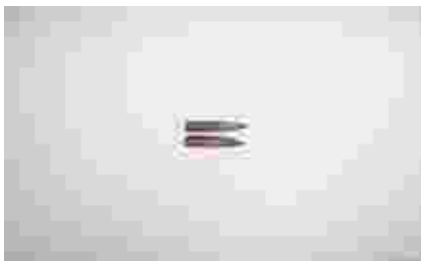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10월 26일 서울대의대 법의학고실 유골보관소의 출토물에서 M1탄피 149개, 칼빈 탄피 22개를 확인하였다. 현장 목격자 이○○의 진술에 따르면 굴 앞에 꿰어앉은 희생자들의 뒤 근거리에서 정조준 사격하였으며,²³⁾ 피격당한 희생자들이 17m 깊이의 수직굴에 떨어졌을 것이므로 확인사살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탄두가 발사된 탄피 1개는 1명의 희생자에 대응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증언에 의하면 총 뿐만 아니라 죽창 등도 처형에 사용되었으며, 발굴당시 분실한 탄피도 있었다고 하므로 이들 탄피의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최소한 171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M1탄피〉



〈칼빈탄피〉



〈M1탄두〉



〈칼빈탄두〉

나. 확인된 희생자의 신원

다음으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증언, 관련 자료를 통해 금정굴에서 발견된 유골·유품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금정굴희생자들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금정굴사건의 희생자로 확인된 명단²⁴⁾은 〈표5〉와 같으며, 확인된 희생자들의 연령대별, 성별, 지역별 분포 상황은 〈표 6〉, 〈표 7〉, 〈표 8〉과 같다. 그리고 금정굴사건의 희생자로 추정되는 명단은 〈표 9〉로 정리하였다.

23)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14쪽.

24) 희생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참고인 진술로 확정하였다.



〈표 5〉 금정굴사건 희생자로 확인된 명단

연번	희생자	거주지	성별	나이	직업	비고(사건번호)
1	고산돌	중면 백석리 507	남	52	농업	253
2	최의현	중면 마두리 215	남	37	농업	미신청
3	유해진	중면 백석리 507	남	32	농업	805
4	한복영	중면 백석리 507	남	32	농업	804
5	허정임	중면 백석리 507	여	22	가사	미신청
6	정한희	중면 일산리 96	남	52	농업	578
7	정대철	중면 일산리 96	남	20	농업	578
8	정영학	중면 일산리 101	남	21	농업	574
9	김석권	중면 일산리 585	남	24	상업	806
10	이봉린	중면 일산리 602	남	46	농업	577
11	박순조	중면 일산리 610(추정)	남	25	양복점	432
12	박순환	중면 일산리 610(추정)	남	23		432
13	한창석	중면 일산리 613	남	40	대서소	3446
14	서상용	중면 일산리 650	남	46	교장	249
15	서병철	중면 일산리 650	남	24	교사	249
16	서병욱	중면 일산리 650	남	19	학생	2317
17	이규봉	중면 일산리 655	남	51	농업	278
18	이정례	중면 일산리 655	여	17	가사	278
19	윤영규	중면 일산리 655-317	남	25		2312
20	안희준	중면 일산리	남	26	농업	274
21	이기철	중면 일산리	남	42	농업	6521
22	김광제	중면 일산리 968	남	24		6958
23	박근식	중면 장항리	남	40	농업	2313
24	박인식	중면 장항리	남	19	농업	2313
25	권학길	중면 장항리 438	남	23	농업	6269

연번	희생자	거주지	성별	나이	직업	비고(사건번호)
26	최종석	중면 장항리 483	남	30	농업	260
27	박희문	중면 주엽리 815	남	27	농업	378
28	김용남	송포면 가좌리 103	남	39	농업	미신청
29	김영선	송포면 구산리 405	여	57	농업	2816
30	전옥자	송포면 구산리 405	여	17		2816
31	이돌섭	송포면 대화리 849	남	19		275
32	김천흥	송포면 덕이리 405	남	45	농업	250
33	김영환	송포면 덕이리 419	남	27	철도근무	254
34	김재환	송포면 덕이리 419	남	29	농업	254
35	유희철	송포면 덕이리 420	남	30	철도근무	252
36	안점봉	송포면 덕이리 430	남	59	철도근무	247
37	안형노	송포면 덕이리 430	남	35	장사	247
38	안상노	송포면 덕이리 430	남	21		247
39	안용노	송포면 덕이리 430	남	20	농업	576
40	이용우	송포면 덕이리 735	남	26	농업	261
41	최재옥	송포면 덕이리 937	남	24	교사	259
42	최연	송포면 덕이리 1006	남	27	교사	258
43	최담	송포면 덕이리 1006	남	22		258
44	박만협	송포면 덕이리 1093	남	28	농업	248
45	조병호	송포면 덕이리 1193	남	39	농업	6065
46	김진섭	송포면 덕이리 1193	남	30대	농업	6065
47	김명산	송포면 덕이리 1198	남	30대	농업	6782
48	방용섭	송포면 덕이리 1198	남	20대	농업	6782
49	김만성	송포면 덕이리	남	30대	농업	6782
50	김진홍	송포면 덕이리 1199	남	24	농업	357
51	심기만	송포면 법곶리 71	남	23	농업	279
52	심우현	송포면 법곶리 71	남	26	농업	279



연번	희생자	거주지	성별	나이	직업	비고(사건번호)
53	심준섭	송포면 법곳리 71	남	26	농업	2817
54	유필준	송포면 법곳리 97	남	35	농업	277
55	노인성	송포면 법곳리 381	남	24	농업	257
56	심재천	송포면 법곳리 448	남	25	농업	255
57	노춘석	송포면 법곳리 449	남	39	농업	256
58	흥기원	벽제면 성석리 892	남	20	회사원	6982
59	김상국	벽제면 내유리 650	남	21	농업	280
60	김호연	벽제면 내유리 657	남	23	농업	276
61	서정희	벽제면 사리현리 390	남	35	농업	575
62	김대봉	벽제면 사리현리	남	20대	농업	미신청
63	이봉훈	벽제면 사리현리	남	40	농업	미신청
64	이태우	지도면 강매리 188	남	40	농업	7822
65	이병희	지도면 신평리 19	남	27	악기점	251
66	이금현	지도면 행주외리 261	여	46	가사	3429
67	장기연	원당면 도내리	남	27	농업	6827
68	장석용	원당면 도내리	남	29	농업	미신청
69	장기철	원당면 도내리	남	25	농업	미신청
70	박중원	원당면 주교리 323	남	40		2315
71	박상하	원당면 주교리	남	18		2315
72	김순동	은평면 수색리 125	남	38		245
73	정씨	은평면 구산리	여	53		576
74	안종건	은평면 구산리	남	19		576
75	안복례	은평면 구산리	여	17		576
76	채기동	교하면 야당리 22	남	36	농업	899

〈표 6〉 확인된 희생자의 연령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계
희생자(수)	8	35	17	10	6	76
비율(%)	10.5	46.1	22.4	13.1	7.9	100.0

〈표 7〉 확인된 희생자의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희생자(수)	69	7	76
비율(%)	90.8	9.2	100.0

〈표 8〉 확인된 희생자의 거주지별 분포

구역	중면	송포면	벽제면	지도면	원당면	은평면	(파주)교하면	계
희생자(수)	27	30	6	3	5	4	1	76
비율(%)	35.5	39.5	7.9	3.9	6.6	5.3	1.3	100.0

〈표 9〉 금정굴사건 희생자로 추정되는 명단²⁵⁾

연번	희생자	거주지	성별	나이	직업	비고(증언자 등)
1	설문현	중면 마두리	남	30대	농업	이순창
2	김영석 부친	중면 일산리	남			이병순
3	이창선	중면 장항리 480	남	30대	농업	유족은 부인함
4	최영실	송포면 덕이리 701	남	20대		미신청
5	최원영	송포면 덕이리	남			최각의 부친, 최진
6	최대철	벽제면 사리현리	남			이경용
7	원종선 외삼촌 이씨	벽제면 사리현리	남	20대		이경용, 서영자
8	김화진	벽제면 사리현리	남	20대		이경용, 서영자
9	심언섭	지도면 강매리	남	30대		안영식

25) 희생사실에 대한 참고인 진술이 1~2명에 그친 경우 등이다.



먼저 희생자의 연령별 분포는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활동적인 20~30대가 68.5%였다. 성별분포를 보면, <표 7>에서 나타나듯이 전체 희생자 중 여성이 7명으로 대부분 10대와 50대였는데, 이들은 모두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것이 확인되었다. 거주지별로는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송포면과 중면의 희생자가 많았는데 이는 본 사건이 고양경찰서가 있는 중면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벽제면의 주민 80명을 벽제면 치안대장 홍○○가 금정굴로 끌어가 총살했다는 진술²⁶⁾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다. 희생자가 군인 혹은 ‘극렬좌익’이었다는 주장 검토

당시 태극단원이었던 김○○은 “거기 금정굴에 우리 아군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국군도 많이 인민군들이 집어넣고 그랬는데, 국군도 거기 많이 들어갔어요. 군인들도, 패잔병들이예요.”하면서 금정굴에 부역혐의자뿐 아닌 패잔병도 희생당했으며, 패잔병들이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유품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며, 또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²⁷⁾

그러나 희생자 중 군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은 발견되지 않았고, 같은 태극단원 김○○은 이와는 상반되게 금정굴에서 희생된 태극단원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²⁸⁾ 특히 발굴된 총탄 및 탄피 역시 당시 국군과 경찰이 사용하던 M1, 칼빈이었기 때문에 국군이 피해자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태극단 측이 만든 유인물 「금정굴 피학살 양민유족회의 부당한 주장과 요구를 반박한다」에서는 “인민군이 패주하면서 지역의 좌익분자와 합동으로 군경가족 및 민족진영 인사 2,000여명을 학살한 사실은 있으나, 양민들이 1,000~2,000여 명이 집단학살 당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조작에 불과하다. 9·28 서울수복 직후 경찰이 극렬 좌익분자 50~60명을 처형한 일은 있으나, 당시 경찰의 조사만으로 즉결처형한 점은 당시가 전쟁 중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희생자는 순수민간인이라기 보다는 극렬좌익²⁹⁾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인, 참고인 및 증언자들 대부분은 국군에 의해 고양지역이 수복이 되었을 때 이미 ‘극렬 좌익’은 대부분 월북³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인민군 점령하 인민위원회

26) 이정용 진술, 2007. 4. 27. 녹취록 2쪽.

27) 김○○ 진술, 2006. 12. 15. 녹취록 7~8쪽.

28) 김○○ 진술, 2006. 9. 12. 전화면담.

29) 태극단원 등 가해 측 참고인들은 극렬한 좌익활동으로 인민재판에 의한 우익인사 처형, 의용군 장용행위를 들고 있으며, 태극단 교하지단장이었던 이○○는 농민위원장의 토지개혁행위도 극렬한 행위라고 진술하였다.

30) 소극적 부역혐의자들 중 인근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은 국군 수복 초기만 피하면 중형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간부들은 형식상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로 대개 각 리의 주민대표자들이었으며 해방정국에서의 좌익 활동은 물론 정치·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많았다고 증언한다. 특히 당시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참가 혹은 협력행위를 좌익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일반 행정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보았으며, 그에 가담한 사람조차도 대부분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의해 하는 수 없이 일을 하게 된 것이므로 국군 수복 후 극형을 받게 될 행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정도의 소극적 협력을 한 사람조차도 희생자 중 일부에 해당할 뿐이므로 ‘희생자들이 극렬좌익’이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된다.

결국 희생자 중 일부가 인민군 측에 의해 처형된 국군 패잔병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금정굴 희생사실과의 구체적인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금정굴에서 군·경·우익청년단 등이 희생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소결

본 사건과 관련한 전체희생자의 규모는 1995년 발굴된 유골감정의 결과를 근거로 할 경우 전체 희생규모는 최소 153명 이상, 비비선의 수를 근거로 할 경우는 최소 160명 이상, 발굴된 탄피의 수를 근거로 할 경우는 최소 171명 이상으로서 판단되는데 이중 가장 포괄적인 결론은 유골감정의 결과인 최소 153명 이상이다.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과 탄피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부역혐의자, 또는 수복직후 행방불명되거나 도피한 부역혐의자의 가족원임이 확인되었다.

인공 치하에서의 적극적 부역활동자들은 국군 수복 전후 즉각 도피하여 행방불명 상태였으며, 인공 치하 인민위원회 일과 관련된 희생자 대부분의 활동 내용은 ‘극렬’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증언이 많다. 본 사건의 희생자들은 북한의 점령정책 시기 자신들의 ‘부역행위’ 수준이 처벌받을 만큼 적극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에서 거주지에 남아 있던 주민들과 그 가족·친척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부역혐의와 무관하게 무고에 의한 희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가족이나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아직도 무고의 원인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도 대부분 부역행위와 무관하게 ‘부역을 했을 것이라는 혐의’만으로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희생자 중에서 중면 마두리 고산돌 등 76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연령별로는 활동적인 20~30대가 가장 많이 희생되었으며 10대 희생



자도 8명이나 되었다. 성별 구성을 보면 7명의 여성 희생자도 확인되는데 대부분 10대와 50대였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고양경찰서의 인근 지역인 중면과 송포면의 거주자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3. 희생경위

가. 희생원인

신청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희생자들은 자신들의 인공치하 소극적인 부역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국군 수복 후 그 중 상당수가 금정굴에서 희생당했음이 확인된다. 신청인들은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부역행위가 처벌받을 만한 잘못된 행위라고 판단했다면, 국군 수복 무렵에 도피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먼저 본 사건 피해자 가운데 신평리 이병희는 인민위원회 자위대장 혐의로³¹⁾, 일산리 이봉린은 전쟁 전부터 맡아 하던 구장을 인민군 점령아래에서도 계속한 혐의로, 장항동 박근식은 배급소일을 한 혐의로, 덕이리 김만성은 인민위원회 일에 참여한 혐의로, 강매리 이태우는 자수하였으나 인민위원장이었다는 이유로, 파주 야당리 채기동은 쌀을 걷어 준 일로, 백마 설문현은 마두리 인민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³²⁾, 내우리 김호연, 김상국은 인민위원회 일을 한 혐의로 금정굴에서 희생당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사건 피해자 중에는 부역혐의자의 가족 혹은 친척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경우가 많았다. 희생자 중 신평리 이금현은 남편이 인민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이유, 일산리 서상용, 서병철, 서병옥은 가족 중 부역혐의자 서병숙 때문에, 덕이리 안점봉, 안형노, 안상노, 안종덕, 안종옥은 가족 중 부역혐의자 안○○ 때문에, 덕이리 김천홍은 부역혐의자 가족을 도왔다는 이유로, 덕이리 김진홍은 형 김진호의 부역행위 때문에, 백석리 고산들은 사촌형제 고준수, 고준구가 전쟁이 나자마자 행방불명이 된 사실 때문에, 대화리 이돌섭은 친척이 희생자 집을 인민재판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산리 박순조, 박순환은 막내동생 박순득의 인민군 참여혐의 때문에, 일산리 이규봉은 자식들이 의용군에 자원했다는 이유로, 은평면 안용노 등은 희생자 안점봉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구산리 김영선 등은 아들 전활삼이 의용군에 자원했다는 이유로 희생당했음이 확인된다.

이 점은 참고인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태극단원 김○○은 경찰이 인공치하 당시 인민군

31) 이○○ 진술, 2006. 8. 17. 진술조서 5쪽. 이 주장에 대해 유족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2) 마두리의 인민위원장 설문현은 일산지역이 유엔군에 의해 수복이 되자 체포를 피해 도망 다니다 태극단원이 국방부 정훈국 훈련중인 서울 창천초등학교로 찾아갔으며, 태극단원 백마지단장 강○○ 등을 만나 태극단원이 되게 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강○○이 “알았어, 걱정하지 말아. 너는 내가 서장한테 얘기할게. 집에 가서 자. 그러면 내일 서장한테 연락해서 너 데리러 갈게” 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새벽에 집에서 붙잡혀 금정굴에서 희생당했다.(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14~15쪽.)

측에 의해 피해당한 감정으로 부역혐의자의 가족까지 희생시킨 것이라고 추정하였고³³⁾, 고양경찰서 유치장을 관리하던 순경 정○○은 유치장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빨갱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사촌이 일 좀 봤다면 말도 못하고 다 들어갔다”고 하였다.³⁴⁾

한편 법곳리의 신청인들은 심재천, 노인성, 노춘석, 심기만, 심우현, 심준섭, 유필준 등 7명이 단지 보도연맹원이었다는 이유로 희생당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외에도 개인감정에 의한 희생으로 추정되는 사례와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희생자들도 있었다. 서울지방법원 형공 제1838호 판결문은 일산리 한창석의 희생이 개인감정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위 판결문 등 자료와 참고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일산리 최의현, 덕이리 박만협은 경찰 및 치안대 등의 개인감정에 의하여 희생된 경우로 추정된다. 그리고 일산리 김석권, 덕이리 유희철·조병호·방용섭, 수색리 김순동, 주엽리 박희문, 주교리 박중원, 장항리 권혁길의 경우 증언부족으로 구체적인 희생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상 희생의 원인에 의해 희생자들을 구분하자면 아래의 <표 10>과 같다.

<표 10> 희생원인에 따른 구분

희생원인	희생자
부역혐의자 (보도연맹원포함)	유해진, 한복영, 이봉린, 윤영규, 김광제, 이기철, 박근식, 박인식, 권학길, 최종석, 김용남, 김영환, 김재환, 김만성, 이용우, 최재옥, 최연, 최담, 심기만, 심우현, 심준섭, 유필준, 노인성, 심재천, 노춘석, 김상국, 김호연, 서정희, 이봉훈, 이태우, 이병희, 장기연, 장석용, 장기철, 채기동, 김대봉, 홍기원
부역혐의자 가족 (또는 친인척)	고산돌, 허정임, 박순조, 박순환, 서상용, 서병철, 서병욱, 이규봉, 이정례, 김영선, 전옥자, 이돌섭, 김천홍, 안점봉, 안형노, 안상노, 안용노, 김진홍, 이금현, 정씨, 안종건, 안복례
사적 감정	최의현, 박만협, 한창석, 정한희, 정대철, 정영학
기타(미확인)	김석권, 안희준, 박희문, 유희철, 조병호, 김진섭, 김명산, 방용섭, 박중원, 박상하, 김순동
계	76

33) 김○○ 진술, 2006. 12. 15. 녹취록 8쪽.

34) 정○○ 증언, 2006. 3. 12. 녹취록.



나. 희생경과

1) 연행·감금 및 고문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 후 9월 20일 행주지역을, 9월 28일경에는 일산지역을 수복하였다. 유엔군의 진주 소식이 들리자 그 동안 숨죽이고 있던 잔류국군·경찰·대한청년단 등의 본격적인 치안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패잔 인민군 소탕과 부역혐의자 연행이 주요 활동이었다. 이러한 활동은 유엔군의 진주 직전부터 시작되었으며, UN군 진주 후 경찰에 의해 치안이 확보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잔류 경찰관이자 태극단 행주지단원이었던 황○○는 부역혐의자 100여 명을 체포하여 유엔군에 넘기기도 했으며, 이러한 일은 고양지역내 다른 곳에서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역혐의자들이 진주하던 유엔군에 의해 그 자리에서 살해당하기도 하였다.³⁵⁾

소극적인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들은 예상되는 위협을 피해 피신하던 중에 연행되기도 하였으며³⁶⁾, 남아 있는 가족들이 자기로 인해 괴롭힘을 당할 일을 예상하여 자수하기도 하였다.³⁷⁾ 그러나 대부분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집에 있다가 연행 당하였는데, 당시 연행주체는 군경이 아닌 우익 치안대였으며, 이들 일부는 M1소총으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연행된 주민들은 1차로 거주지 가까운 곳의 지서나 치안대사무실, 임시 유치시설 등에 감금되어 있다가 지서소속 경찰관 또는 치안대의 임의적 조사과정을 거쳐 고양경찰서 유치장으로 인계되었다. 경찰 측에서는 감금당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이들은 각 가족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고문조사³⁸⁾가 계속되었다.

능곡·행주 지역(지도면)에서 연행된 부역혐의자들은 먼저 능곡지서로 끌려갔다. 능곡지서에는 유엔군의 진주를 환영하기 위해 능곡초등학교로 왔던 주민들 중 부역혐의를 받던 일산리 이봉린 등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희생자 중 행주의 이금현은 부역혐의자의 가족으로서 비교적 늦은 시기인 10월 15일경 공회당에서 부역혐의자의 행방을 추궁하는 고문을 당하다가 능곡지서로 연행되었다. 지도면 신평리의 이병희도 공회당을 거쳐 능곡지서로 끌려갔다.

희생자 중 송포면 가좌리(현 가좌동) 김용남, 대화리(현 대화동) 이돌섭, 덕이리(현 덕이동) 안점봉, 법곶리(현 법곶동) 심재천 등은 1차로 송포지서에 감금되었으며, 그 후 다시 고양경찰서로 끌려갔다. 송포초등학교에서 열린 유엔군환영행사에 참석한 법곶리 노인성, 노

35) 『태극단투쟁사』, 1983 ; 공○○ 진술, 2006. 9. 21.

36) 희생자 안점봉 일가.

37) 희생자 김진홍, 이태우, 김호연.

38) 유치장에 끌려갔다 풀려난 주민들은 주로 도피 또는 행방불명인 부역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의 거처를 묻는 조사를 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춘석 등은 가좌리(현 가좌동) 중산말 석유창고로 끌려갔다. 송포지서에서 경찰 등이 연행자들에게 총알을 손가락사이에 끼운 후 발로 밟는 고문을 했다.³⁹⁾ 덕이리 창고로 끌려간 안봉이는 남편의 행방을 대라며 치안대 최○○에게 몽둥이로 구타를 당했으며, 다음 날에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함께 감금되어 있던 주민들은 30~40명 정도였다.⁴⁰⁾ 송포면 법곶리 심기만 등은 1차로 도촌치안대 사무실로 끌려갔다가 송포지서를 거쳐 고양경찰서로 갔다. 일산과 가까운 덕이리 김영환, 장항리 박근식 등과 일산지역에 거주하던 서상용 등은 바로 고양경찰서 유치장이나 임시유치창고에 감금되었다.

대부분의 연행자들은 고양경찰서에서 3~7일 동안 간헐 취조 명목의 고문을 당했다. 덕이리 희생자 김진홍은 대소변을 볼 때 도움을 받아야 했으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다고 신청인 김광원이 진술하였다. 고양경찰서에서 이틀 동안 감금당했던 임서북⁴¹⁾은 뺨을 맞는 등 고문을 당하였으며, 감금된 주민들이 마실 것이 없어 자기 오줌을 먹는 모습과 경찰서 맞은편 유치창고에서 치안대가 잡혀 오는 사람을 총 개머리판이나 장작개비로 무조건 때리고 집어넣는 장면을 목격하였다.⁴²⁾ 그리고 유치장 담당 순경 정○○은 마실 물이 없어 오줌을 마시는 모습과 남녀 구별없이 7~8명 들어가는 유치장에 20여 명을 넣어 여자들이 서서 소변을 보는 모습, 아침 점점 때 마다 고문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경찰들이 취조를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⁴³⁾ 유치장에는 유치인들을 관리하는 명부가 있었다.⁴⁴⁾

연행자들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 동안 가족들이 밥을 나르거나 밥을 해 줄 사람들을 찾아서 유치장에 식사를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1950년 10월 31일 국회임시속기록에 기록된 것처럼 고양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⁴⁵⁾

당시 고양경찰서에 끌려갔다가 조사 후 풀려난 사람으로 신평리 희생자 이병희의 지인 유해웅, 법곶리 희생자 유배근의 지인 김정운, 일산리 희생자 서상용의 처 임서북, 구산리 희생자 김영선의 아들 전왈성이 있었다. 그런데 임산부여서 풀려난 임서북 외에 유해웅, 김정운

39) 마임순 진술, 2006. 5. 22. 진술조서 6쪽.

40) 안봉이 진술, 2007. 5. 7. 녹취록 10쪽.

41) 희생자 서상용의 처.

42) 서병규 진술, 2006. 5. 9. 진술조서 14쪽.

43) 정○○ 증언, 2006. 3. 12. 녹취록. 작성된 진술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44) 이에 대해 정○○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왜 그러면 경찰서에는 유치인명부가 있어요. 박상진 그러면 (내가) 금방 알잖아요. 한 마을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름조차 없었어. 유치되었던 사람들은 다 있지.” (정○○ 진술, 2006. 10. 28. 녹취록 5쪽) 그러나 유치인명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45) 제8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39호에는 “한 면에 대개 백 여 명 이상의 부역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데 그 자들에 대한 식량 같은 것도 민간에서 염출을 해서 식사를 부담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라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부천 박제환의원, 국회사무처, 1950. 10. 31.)



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행된 부역혐의자들이 경찰서에서 어떠한 조사를 받았으며, 어떻게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전왈성은 대한청년단장 이○○ 덕분에 금정굴에서의 희생직전에 풀려났는데, 풀려난 이유는 단지 이○○과 잘 알고 있었다는 이유뿐이라고 증언하였다.⁴⁶⁾

2) 금정굴로의 이동

1950년 10월 3일경부터 고양경찰서 유치장 및 임시유치창고에 갇혀 있던 주민들은 10월 9일부터 처형장소인 금정굴로 끌려갔다. 이 장면은 밥을 전하려던 가족들에 의해 직접 목격되었으며, 이송경로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진술, 이송을 보조하던 태극단원들의 진술, 사건 당시 유치장 담당 경찰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1950년 10월 9일 아침 태극단 조○○ 부단장이 태극단원을 집합시키고, 단장인 이○○이 “서장이 나한테 요구하기를 부역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가두어 둘 수 없어서 문산경찰서(그 때는 파주경찰서가 아님)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경찰병력이 약하니까 태극단이 호송을 맡아 달라”고 훈시를 하였다. 그래서 남아 있던 태극단원들 20여 명이 거의 다 호송작업에 동원되었다.⁴⁷⁾ 신청인 서병규는 희생자들이 창고에서 끌려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⁴⁸⁾

그 후 서병규는 그날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금정굴쪽에서 나는 총소리를 듣게 되었다. 잠시 후 부근에 살던 오촌 당숙 서상준이 와서 아침에 끌려간 사람 모두가 금정굴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주었다.

고양경찰서에서 끌려온 희생자들이 봉일천으로 끌려가는 모습은 희생자 김석권의 부친 김상용에 의해서도 목격되었다. 김상용은 금정굴로 끌려가는 희생자들을 뒤따라갔으며, 금정굴의 건너편 산인 고봉산 중턱에서 학살현장을 목격하였다.

46) 고양경찰서에서의 고문으로 전왈성이 견지 못하자 이○○은 함께 죽음을 기다리던 전왈성의 친구 이산규에게 “업고 가라”고 하여 이날 두 사람이 희생직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한다.(이○○ 진술, 2006. 10. 11. 녹취록 3쪽.)

47)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13쪽.

48) 고양경찰서 임시유치창고로 도시락을 가지고 간 서병규(희생자 서상용의 아들)는 희생자들이 창고에서 끌려오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0. 9. 오전 9시경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가지고 고양서로 가보니 그때 저와 같이 도시락을 가져온 가족들이 40~50여명 있었는데, 고양서에서는 도시락을 받아 주지 않고 “창고 뒤편으로 가 있으라”하여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으며 재판은 받겠지만 설사 죽이기가 하겠느냐는 등의 말을 듣던 중 창고에서 군에서 사용하는 비비선(전화선)을 이용하여 수용자들의 손목을 뒤로 묶은 후 연결하여 경찰, 치안대, 태극단 호위 하에 일산시장을 가로 질러 봉일천 방향으로(금정굴 쪽) 가는 것을 보고는 저를 비롯하여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일렬로 끌려가는 일행들 중 아버지, 큰형, 셋째형이 간격을 두고 묶여 끌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무서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서병규 진술, 2006. 5. 9. 진술조서 14~15쪽.)

일산에서 봉일천으로 가는 길가에 집이 있었던 이병순 역시 연행 행렬의 마지막에 있던 부친 이봉린을 비롯한 희생자들을 목격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행렬을 이끌던 자들은 태극단원, 치안대원, 경찰들로 M1총을 메고 총 끝에 태극기를 묶었으며, 경찰들은 유엔군복을 많이 입고 있었고, 치안대원들은 완장을 차고 있었다. 그 날 이후 경찰은 주민들이 볼 수 없도록 일산 중학교 뒤쪽 개울뚝 길로 희생자들을 끌고 갔다.⁴⁹⁾

그 며칠 후 할미마을 철도 건너편(현재 일산역과 월마트 사이)에서 구멍가게를 하던 희생자 김영환의 친척이, 손이 뒤로 묶인 채 끌려가던 김영환을 목격 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20여 명이 경찰의 포위아래 포승줄(비비선)로 묶여 끌려갔다. 당시 경찰이 여섯 명 정도였고, 치안대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⁵⁰⁾ 금정굴로 희생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은 중산마을 약수터 인근 주민들에 의해서도 목격되었다.⁵¹⁾

3) 집단총살 사실

1950년 10월 9일의 집단총살 현장은 위 김상용이 인근 고봉산 중턱⁵²⁾에서 목격하였으며, 태극단원 이○○은 현장보초로서, 김○○은 산 중턱 보초역할을 하면서 현장을 목격하였다. 이날 고양경찰서 임시유치창고에서 끌려나온 40여 명의 주민들은 경찰과 태극단의 감시 아래에서 금정굴로 끌려왔다.⁵³⁾

이날 이미 몇 명의 경찰들이 금정굴에서 총살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전 11시경 이송 행렬이 산 중턱에 도착하자 산 위의 경찰들이 산 중턱의 경찰과 태극단원들에게 주민들을 다섯 명씩 끌고 올라오라고 지시하였다. 경찰은 끌려 온 주민 다섯 명을 수직굴인 금정굴 벼랑에 입구를 바라보며 꿇어앉힌 후 다섯 명의 경찰관이 이들의 등 뒤에서 조준 사격을 가했다. 양손이 묶인 희생자들은 충격에 의해 17m 깊이의 굴 안으로 떨어졌다. 두 명의 손목이 함께 묶인 희생자들은 충격이 없었어도 충격을 당한 희생자와 함께 떨어졌고, 어떤 이들은 총소리만으로도 놀라 떨어지기도 했다. 그 후 경찰과 태극단은 금정굴 속으로 흠을 뿌려 희생자

49) 이병순 진술, 2006. 5. 25. 진술조서 6~7쪽.

50) 김기조 진술, 2006. 6. 2. 진술조서 5쪽.

51) 박현수 진술, 2006. 5. 21. 진술조서 3쪽 ; 정○○은 “국군의 9·28 수복직후 고양·파주지역(파주군 교하면)에서 인민군의 강압에 못 이겨 부역 등에 동원됐던 사람과 가족 50여 명이 밧줄로 묶인 채 심야에 일산역에서 금촌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보았다. 이동 중에 당시 경찰 치안대 소속 책임자가 봉일천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바꾼 뒤 금정굴 주변에서 총과 죽창, 각목 등으로 학살 해 굴속으로 버렸다”고 증언했다. (『새한신문』, 1993. 9. 14.)

52) 금정굴의 길 건너편으로 지금은 고양시 중산마을 1단지가 있다.

53) 태극단원이었던 김○○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 때 가서 인계를 해 주고 왔죠, 경찰한테. 그 때 현장을 목격했어요. (함께 간 태극단원이) 한 20명 되었어요. 경찰이 데려가라니까 우리는 금촌 쪽으로 가는 줄 알고 호위하고 따라간 거지요, 그레가지고 인계하고 내려왔지요,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아래쪽에 있었어요.” (김○○ 진술, 2006. 12. 15. 녹취록 7쪽.)



들의 시신을 덮었다. 충격에 의해서였든, 떨어진 충격에 의해서였든 목숨을 잃기는 마찬가지였으나 이 날 이정선만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후 이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같은 날 금정굴 학살현장에 있었던 태극단원 이○○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래서 금정굴에 갔는데, 나는 지리를 모르잖아. 산속으로. (진술인이 지도를 그리다) 문산 가려면 금촌 지나서 가야 하는데 얼마 가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문산 길이 이쪽으로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산이 있고 이렇게 산이 있었어. 계속으로 들어간 거야. 전부 앉혀놔어. 우리는 총 메고 있고, 겨냥할 것도 없지. 가지고 다니는 거니까. 경찰이 먼저 올라갔었던 가봐. 누가 내려오더니 경찰이 다섯 명 데리고 올라오라고. 태극단원들도 몇 올라오라고. 나도 쫓아 올라갔어. 태극단원도 몇 사람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경찰이 희생자들에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꿇어 앉어. 그러더니 경찰관들이 등 뒤에서 쏘거든. 우리는 깜짝 놀랐거든. 문산으로 보낸다더니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 때 당시 빨갱이는 당연히 죽는 걸로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살상을 다 해버렸다고. 현장까지 갔으니까. 내 눈깔로 봤으니까. 전화선. 밧줄로 엮어. 확실히는 모르겠어. 밧줄은 썩어 없겠지. 뽕뽕선만 남았겠지.”⁵⁴⁾

이후 금정굴에서의 집단총살장면은 계속 인근 주민들에게 목격되었다. 정○○은 후퇴중의 좌익에게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손한영의 장례행사에 참석하던 중 금정굴 근처에서 치안대와 경찰이 열댓 명의 주민을 끌고 와서 “아저씨들 잠깐 피해주소!”라는 말을 한 후 희생자들을 총으로 쏘아 금정굴에 집어넣는 것을 목격하였다.⁵⁵⁾

경찰의 민간인 집단처형 사실은 서울지방법원 형공 제1838호 판결문에도 드러나는데, 신청인 어분순(위 한창석의 며느리)은 위 한창석이 치안대 이○○에 의하여 고양경찰서로 끌려가 금정굴에서 희생되자 유족들이 그 억울함에 대해 어디론가 진정하였고, 그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국 이○○ 등 2명이 사형당한 사실에 대해 시어머니로부터 들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⁶⁾ 따라서 이 증언과 위 판결문의 내용이 같은 사건임이 확실하므로 희생자 한창석이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금정굴에서 총살당했음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54)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13~14쪽.

55) 정○○ 증언, 『금정굴학살은 빙산의 일각이다』, 2003. 50쪽; 이날 장례식에 참가한 손한영의 동생 손금련은 희생자들을 끌고 가는 경찰의 행렬이 오자 상어를 내려놓고 길을 비켜주었으며 잠시 후 금정굴쪽에서 나는 엄청난 총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손금련 증언, 1998. 2. 7. 녹취록 3~4쪽)

56) 어분순 진술, 2006. 5. 8. 진술조서 3~4쪽.

금정굴사건이 진행 중인 10월 중순경, 전쟁 전 능곡지서에 근무하다가 고양경찰서로 복귀한 순경 김○○은 근무 중 서너차레에 걸쳐 연행·감금된 주민들의 총살집행에 고양경찰서 소속 동료 경찰관들이 동원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당시 1회에 동원된 경찰관은 서너명이었고, 총살당한 주민들은 대여섯명이었다는 말을 경찰 동료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⁵⁷⁾

정○○에 따르면 그가 근무할 당시(1950년 10월 10일 이후로 추정)에는 오전에 처형하는 일은 없었으며,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끌고 가서 처형했고, 나중에는 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한다.⁵⁸⁾ 그러나 위 김○○은 차를 이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1950년 10월 9일 사건 후 희생사실을 목격한 김상용이 같은 날 희생자 이봉린의 동생 이삼린에게 이에 대해 알려 주자 시신이나마 수습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오후 1시경 금정굴로 갔으며, 위 이삼린 등 2명이 굴속으로 내려가서 시신을 찾게 되었다. 금정굴 사건 현장까지 함께 갔던 희생자의 아들 이병순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억울하지만 아버님의 시신이나마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즉시 작은아버님과 함께 반장을 보셨던 동네 어른들 7명과 금정굴로 달려갔습니다. 밧줄과 사다리, 마차 바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때가 점심 때 즈음이었습니다. 밧줄을 이용해서 작은아버지와 동네반장 어른, 두 분이 내려가셨습니다. 두 분이 내려가시자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이경선씨입니다. 우리가 꺼내주자마자 바로 고봉산쪽으로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이경선씨 사위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때 이경선씨는 뺨에 총알이 스치는 상처만 입었다고 하더군요. 작은아버지가 내려갔다 오시더니 그냥 피비린내 나고, 생명이 덜 끊어져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사람, 팔이 떨어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흙이 조금씩 덮여 있었고요. 비록 시간은 점심때였지만 굴 안은 캄캄했고 비좁아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디 시신을 옮길 수도 없었어요.”⁵⁹⁾

57) 김○○ 진술, 2007. 5. 10. 진술조서 8쪽. 본인은 윤이 종계도 집단총살에 참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58) 정○○ 증언, 『금정굴학살은 병산의 일각이었다』, 2003, 45쪽.

59) 이병순 진술, 2006. 5. 25. 진술조서 9쪽.



4) 사건 발생일자

신청인 증언을 통해 확인된 본 사건 발생일자별 희생자는 아래 <표 11>과 같다.

<표 11> 사건발생일⁶⁰⁾과 희생자

희생일	희생자
1950. 10. 9.	최의현(추정), 김광제, 김석권, 박순조, 박순환, 서상용, 서병철, 서병욱, 이봉린, 정한희, 정대철, 안점봉, 안용노, 최담, 최연, 최재욱, 박만협(추정), 박희문(추정), 정영학(추정)
1950. 10. 12.	고산돌(추정), 김용남, 이돌섭, 김상국
1950. 10. 13.	김영환, 김재환, 조병호, 김진섭, 김명산, 방용섭, 김만성
1950. 10. 16.	한창석, 박근식, 박인식, 유필준, 노인성, 노춘석, 심기만, 심우현, 심준섭, 심재천
1950. 10. 17.	김호연, 이봉훈, 김영선, 전옥자
1950. 10. 23.	김진홍
1950. 10. 25.	이기철
1950. 10. 31.	최종석
확인 안 됨	유해진, 한복영, 허정임, 안희준, 윤영규, 이규봉, 이정례, 권학길, 김천홍, 유희철, 이금현, 박중원, 박상하, 김대봉, 서정희, 이병희, 안형노, 안상노, 이용우, 이태우, 장기연, 장석용, 장기철, 김순동, 정씨, 안종건, 안복례, 채기동, 홍기원
계	76

이로 보아 10월 3일 이후 희생자들을 구금하였다가 10월 9일부터 총살이 시작되었고, 대체로 10월 말까지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명까지 총살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소결

금정굴사건의 희생자들은 자수 또는 연행의 방법으로 각 지역의 파출소 및 치안대사무실, 창고 등을 거쳐 고양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3~7일간의 고문을 수반한 조사를 거쳐 10월 9일부터 총살 후 암매장 당하였다. 고양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던 주민들은 ‘유치인명부’가 작성·관리되었다고 하나 명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유엔군의 진주와 함께 본격적인 무장 치안활동을 시작한 잔류 군경, 청년단원들은 주로

60) 금정굴사건의 최초 희생일이 10월 7일로 당시 희생자는 최담이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희생자의 동생 최진은 최담이 최연, 최재욱과 함께 희생되었다고 진술하므로 최담의 희생일은 최재욱이 희생된 10월 9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사건에 의한 희생은 10월 9일부터 발생하였다.

패잔인민군 소탕과 부역혐의자 연행을 주도 하였다. 이에 따라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들은 예상되는 위험을 피해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피신하지 않고 있었다. 그 후 연행된 주민들은 우선 거주지 가까운 곳의 파출소나 치안대사무실, 임시 유치시설 등에 감금되어 있다가 임의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고양경찰서 유치장으로 인계되었다. 경찰서 측에서는 임의 감금당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각 가족들이 가져오는 식사로 끼니를 대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도 고문을 수반한 조사가 계속되었다.

경찰에 의해 치안이 확보되자 고양경찰서 유치장 및 임시유치창고에 갇혀 있던 주민들은 1950년 10월 9일부터 금정굴로 끌려가 처형당하기 시작했다. 희생자들은 10여 명의 경찰과 20여 명의 태극단·치안대 등 경찰보조인력에 의해 한 번에 20~40여 명이 끌려갔다. 처음에는 일산시장을 가로질러 봉일천길을 이용해 금정굴로 갔으나, 주민들의 눈에 많이 띄자 우회하였으며 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1950년 10월 9일 고양경찰서 임시유치창고에서 끌려나온 40여 명의 주민들은 경찰과 태극단의 감시 아래에서 금정굴로 끌려와 처형당했는데, 10명의 경찰이 2개조로 번갈아가며 40여 명의 주민들을 집단총살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10월 9일을 전후하여 11월 2일까지 금정굴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

4. 가해의 과정과 각 주체들의 역할

가. 치안대와 태극단의 활동

1) 치안대의 활동

수복 직후 조직된 우익 치안대는 경찰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치안대 활동은 1950년 7월 22일에 선포된 『비상시향토방위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⁶¹⁾ 이에 따라 1950년 8월 5일 대구시,⁶²⁾ 8월 14일 부산시⁶³⁾에서 자위대가 결성되었다. 경기 강화지역에서는 일민주의청년단, 대한정의단, 민주청년반공돌격대원 등이 통합하여 강화군치안대를 결성하였으며, 국군 수복 후 부역혐의자 연행 및 경계임무 등 경찰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 후 이들 중 핵심간부들이 ‘강화향토방위특공대’를 발족시켜 좌익인사 및 부역자 색출 활동을 하였으며,⁶⁴⁾ 이 때 강화지역 20여 곳에서 부역혐의자에 대한 집단총살사건이 발생하기도 하

61) 「비상시향토방위령」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대한청년단원을 대장으로 하는 부락단위 ‘자위대’를 조직해야 하며(제7조), 관할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제12조) 부락의 방위와 방법을 목적으로 부역혐의자를 감시하는 임무(제8조)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칭만 다를 뿐 본 사건의 ‘치안대’의 성격과 일치한다.

62) 『대구매일』, 1950. 8. 5.

63) 『민주신보』, 1950. 8. 16.



였다. 같은 경기 북부지역인 경기 양주 진건면에서는 국군 수복 후 대한청년단의 추천과 양주경찰서장의 승인으로 경찰협조기관인 ‘향토방위대’가 조직되었는데,⁶⁵⁾ 이들에 의해 229명에 이르는 부역혐의자가 색출·연행되었다.

고양지역에서는 유엔군에 의해 수복된 직후 치안대가 누구를 중심으로 언제, 어떻게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복 직후의 부역혐의자들에 대한 연행시기, 고양금정굴 사건 희생자의 연행시기, 치안대원들의 전력, 치안대에 의한 희생사실 등을 통해 이들의 활동 개요를 짚어볼 수는 있다.

대부분의 면, 리 치안대의 간부들은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등 우익청년단체 소속원들이었다.⁶⁶⁾ 고양군 전체 치안대장은 고양군 대한청년단장 이○○⁶⁷⁾이었다. 참고인 정○○은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조한 주민들을 의용경찰이라고 진술하였는데,⁶⁸⁾ 서울지방법원 형공 제 1838호 판결문에서 일산리 치안대장 이○○를 ‘의용경찰대’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치안대는 의용경찰과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다.

치안대는 경찰의 복귀에 호응하여 각 지서와 인접해 있는 이발소, 공회당, 마을의 큰 집 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사무실과 유치시설을 확보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각 마을의 부역혐의자들을 1차로 연행하여 감금하고, 고문을 동반한 취조활동을 하였다. 행주내리의 치안대는 공회당과 한강변 얼음창고를 유치시설로 사용하였으며,⁶⁹⁾ 가좌리의 치안대는 송포지서와 가까운 송포초등학교 앞 이발소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대화리 창고를 유치시설로 쓰고 있었다.⁷⁰⁾ 성석리의 치안대는 벽제지서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옛 성석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시설로 사용하였다.⁷¹⁾

치안대가 주로 한 활동은 부역혐의자를 연행하는 일이었는데, 이들은 인공치하에서 자신들이 탄압받은 것에 대한 ‘보복심’⁷²⁾과 ‘살아남기 위한 변신’⁷³⁾과정에서 부역혐의자들을 희

64) 『강화사(상)』, 2003, 716~718쪽.

65) 양주경찰서장 고○○ 취조서, 1951.

66) 그러나 이들 중에는 인민군 점령 아래에서 부역활동에 참여했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재빠르게 변신한 사람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구산리 피○○, 문○○, 덕이리 정○○, 일산리 이○○, 조○○, 이○○ 등은 전쟁 전 좌익활동을 하였거나 인민군 점령 당시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였다.

67) 이○○ 진술, 2007, 1, 9, 녹취록 14쪽; 김○○ 진술, 2006, 8, 22, 진술조서 5쪽.

68) “의용경찰이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민보단이란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네들이 경찰서에서 일하면 의용경찰이라고 했어요. 월급은 안 받지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경찰로 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경찰학교를 나와야지.”(정○○ 진술, 2006, 10, 28, 녹취록 7쪽.)

69) 이의모 진술, 2006, 5, 4, 진술조서 5쪽.

70) 이병희 진술, 2006, 10, 24, 녹취록 9쪽.

71) 벽제면 치안대장 홍○○는 벽제지서를 치안대사무실로 쓰며 연락을 했다고 한다. (이○○ 진술, 2007, 5, 15, 녹취록 10쪽.)

72) 인민군 점령아래에서 희생당한 우익단체원의 가족들이 치안대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보복한 사례를 파주 산남리, 고양 구산리, 덕이리에서 찾을 수 있다.

73) 이는 적극적으로 활동한 치안대원들 일부가 부역혐의자라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생양으로 삼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치안대는 평소 알고 지내는 같은 마을주민 보다는 이웃 동네의 주민들을 연행하였으며, 복면을 하고 주민들을 연행하기도 하였다.⁷⁴⁾ 신청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치안대의 본격적인 활동은 희생자들이 연행되기 시작한 10월 2일 경부터 시작되었다. 수색리의 치안대는 태극단이 정식 간판을 걸기 전부터 신○○을 중심으로 부역협 의자들을 연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⁷⁵⁾ 간판을 건 후 일산에 갔을 때 이미 많은 부역협 의자들이 고양경찰서 유치창고에 갇혀 있었다고 하였다.⁷⁶⁾ 연행된 주민들은 치안대사무실에서 취조 명목의 항상적인 고문·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심지어 일부 태극단원 등 우익 단체원들도 당한 사례가 있다.⁷⁷⁾

또한 수복 직후 치안대는 주민들을 연행·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쟁 중 전국 여러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던 현상이었다.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내우리의 치안대는 쌀을 달라고 하는 등 재산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쌀 몇십 가마니를 치안대에게 주고 풀려나기도 하였다.⁷⁸⁾ 장항리의 치안대는 박근식, 박인식이 치안대 사무실에 감금되어 있는 사이 가족들에게 찾아와 재산을 내놓으면 풀어준다고 하였으나 희생자들의 부친이 거절한 일이 있었다.⁷⁹⁾

치안대는 부역협의 주민들에 대한 처형을 직접 하기도 하였다. 지도면 인민위원장 김○○이 수복 직후 치안대로 짐작되는 사람에게 처형당했으며 행주내리 맨돌마을 63명이 치안대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⁸⁰⁾ 그리고 일산리뿐 아니라 수색리에서도 치안대들이 부역협의주민들을 미리 잡아놓고 보복을 했다고 하며,⁸¹⁾ 성석리에서도 진발, 잣골, 안골의 주민들 일부가 치안대에 의해 뒷골 방공호에서 희생당했다고 한다.⁸²⁾

74) 파주 산남리에서는 복면을 쓴 치안대원들에 의해 주민들이 끌려갔는데 나중에 마을에는 고양 구산리의 치안대원들이 끌려간 것이라고 알려졌다.

75) 이러한 치안대의 초기 활동은 계엄사령관 등 정부기관에 의해 고무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다음은 계엄사령관이 애국반원을 조직하여 부역협의를자를 적발하라는 지시에 대한 언론기사이다. “부역자는 우리손으로, 20일내 반단위로 적발, 계엄사령관지시로 실시 - 계엄사령관 지시에 의하여 서울시에서는 시내각구동회를 통하여 적치에 부역한 자 또는 협력한 자를 반원연대책임하에 철저히 적발하기로 되었다. 즉각 애국반원은 오는 20일까지 전반원연대책임하에 부역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명부를 작성 소관 파출소에 동화를 경유제출한다.”(『동아일보』, 1950. 10. 12.)

76)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7쪽.

77) 태극단원 이○○이 후퇴하는 좌익에 끌려가다가 임진강 건너 고랑포에서 탈출 중 선유리치안대에 잡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고, 다시 문산경찰서로 넘겨져 또 다시 갇은 고생과 고문으로 수난을 당하였다. 능곡치안대는 태극단 수색지단장 조○○, 본단의 정보부장 김○○이 내무서에서 근무한 사실을 빌미로 참혹한 고문을 가하기도 하였다.(태극단투쟁사, 1983, 54쪽, 55쪽.)

78) 김상길 진술, 2006. 6. 10. 진술조서 6쪽.

79) 박영숙 증언, 1998. 1. 17. 녹취록 9쪽.

80) 이○○ 진술, 2006. 8. 17. 진술조서 3~4쪽.

81)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18쪽.

82) 이○○ 진술, 2007. 5. 15. 녹취록 11쪽.



한편 고양경찰서 외근 경찰관이었던 김○○은 “치안대는 경찰관 밑의 하수인”으로 본다고 증언하였다.⁸³⁾ 이처럼 치안대는 경찰의 지휘를 받아 치안활동을 보조하는 조직이었으므로 경찰의 묵인 하에서 사찰·부역자 고문·처형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2) 태극단의 활동

고양지역 태극단은 수복 후 치안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이 조직에는 대한청년단원, 호국군, 전국학생연맹 뿐 아니라 경찰과 잔류국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태극단은 유엔군의 일산지역 수복 직후 미해병대 임시장교 석○○ 중위로부터 치안권을 위임받아 고양경찰서가 복귀하기 전까지 치안을 담당하였다.⁸⁴⁾ 석○○은 고양경찰서 소속의 순경으로 미해병대에 배속된 신분⁸⁵⁾이었다. 치안권을 위임했다는 석○○은 미해병대 장교로서가 아니라 고양경찰서 경찰관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⁸⁶⁾ 결국 태극단은 고양경찰서장이 부임하는 공식 복귀 이전까지 고양지역의 치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태극단 별동대장 이○○의 진술에 따르면, 대체로 10대의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일산리의 태극단원들은 국군수복 초기 치안활동을 통해 연행·감금한 부역혐의자들을 고양경찰서가 복귀함에 따라 넘긴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반면 이들 부역혐의자들은 이미 태극단보다 먼저 활동했던 치안대가 잡아들인 것이며 태극단은 잡아온 사람들을 지키는 보조를 선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일산에 도착했을 때 치안대가 이미 부역혐의 주민들을 붙잡아 놓은 상태여서 유치창고에서 보조를 서는 일 외에 할 일이 많지 않았다고 하였으며,⁸⁷⁾ 태극단 교하지단장 이○○는 대부분의 부역혐의자 연행활동은 치안대가 한 것이지 태극단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⁸⁸⁾

그러나 일부 태극단원들이 부역혐의자 연행 활동을 했다는 것은 다른 자료와 진술에서 확

83) 김○○ 진술, 2007. 5. 10. 진술조서 11쪽.

84) “미해병대 임시장교인 석○○ 중위가 일산에 와서 일산주민을 모아 놓고 하는 말이 한국경찰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지역 치안유지는 태극단에 위임하니 전주민들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으면 곧바로 태극단으로 반납하라는 훈시를 내렸고, 이로 인하여 5일 후 고양경찰서가 복귀됨에 따라.....” (『태극단투쟁사』, 1983, 55쪽.)

85) 석○○ 경찰관신분카드. 경찰관 김○○은 국군 수복 직후 석○○이 미군 중위계급장을 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김○○ 진술, 2007. 5. 10. 진술조서 7쪽.)

86) 고양지역 치안권을 태극단에 위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점령지역 치안과 관련한 UN군의 지위 및 UN군에 배속된 경찰의 지위에 대한 관점이 정리된 바가 없으므로 태극단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전쟁 전부터 알려진 고양경찰관 석○○의 지위로 보아 태극단으로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87)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11쪽.

88) 이○○ 진술, 2007. 1. 9. 녹취록 11~12쪽.

인된다. 태극단은 1950년 8월 20일 작전회의 결정사항 제8항으로 부역자 명단작성을 임무로 하였으며,⁸⁹⁾ 수색지역의 태극단원들은 태극단의 조직이 정비되기 전에 이미 치안대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태극단투쟁사』(1983), 『고양시사 7권』(2005), 태극단 별동대장 이○○의 진술, 신청인 김용성의 진술에서 확인된다.⁹⁰⁾ 국군 수복 직후 일산에서도 태극단원들이 치안대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사실은 최진 증언에서도 확인된다.⁹¹⁾ 태극단장 이○○은 국군수복 직후 일산리에서 90여 명의 부역혐의자를 연행하여 가두었다고 진술하였다.⁹²⁾ 구산리 이○○은 국군수복 후 치안대로 활동했으며,⁹³⁾ 수색리 조○○도 경찰과 협력하여 치안활동에 참여하였다.⁹⁴⁾ 김○○은 감금했던 부역혐의자를 복귀한 경찰에게 넘겨주는 활동과 경찰서 철로변에서 보초서는 활동을 했으며,⁹⁵⁾ 동패리 김○○은 태극단원으로서 치안활동을 하였다.⁹⁶⁾ 현천리 공○○은 현천리 태극단원 민○○과 함께 치안활동을 하였는데, 당시 치안책임자는 태극단원 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⁹⁷⁾

특히 경찰과의 관계는 긴밀했으며 경찰 중 태극단원인 사람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당시 26세 경찰관이었던 백석리의 허○은 태극단 백마지단원이었다.⁹⁸⁾ 또 다른 경찰관 태극단원이었던 행주지단장 황○○은 수복 후의 자신의 치안활동이 태극단원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 신분으로서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⁹⁹⁾

참고인 이○○은 태극단이 인민군 후퇴 직후부터 치안대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경찰의 복귀 후 고양경찰서 아래에 위치한 직할 파출소를 태극단 본부로 사용하였으며, 일산 치안대원이 부역혐의 주민들을 고양경찰서로 붙잡아 들이고 태극단은 주로 이들이 감금된 유치장의 보초를 맡았다고 하였다.¹⁰⁰⁾

89) 『태극단투쟁사』, 1983, 40쪽.

90) “9월 중순, 수색으로 돌아온 증언자는 태극단원들이 치안대 완장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보고 태극단 수색지단의 간판을 정식으로 달자고 제의하여.....” (이○○ 증언, 『고양시사(2005) 7권』, 410쪽.); “내 친구 아버지 신○○이라고 공부도 많이 하고 쟁쟁한 사람이 있었어. 태극단원들이 완장을 차고 신포병들이 되어서 치안대에 있었지.”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7쪽.); “아버님 친구분들의 말씀입니다. 그 치안대원들이 (수색에서) 태극단활동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김용성 진술, 2006. 5. 30. 진술조서 4쪽.)

91) 최진은 국군 수복 직후 태극단원들이 희생자 최담을 잡으러 집에 왔었다고 증언하였다. (최진 증언, 1998. 2. 27. 녹취록 2쪽.)

92) 이○○ 진술, 2007. 1. 17. 녹취록 6쪽.

93) 이○○ 진술, 2006. 10. 18. 녹취록 3쪽.

94) 조○○ 진술, 2006. 12. 6. 녹취록 4쪽.

95) 김○○ 진술, 2006. 12. 15. 녹취록 5쪽.

96) 김○○ 진술, 2006. 9. 7. 면담보고서 2쪽.

97) 공○○ 진술, 2006. 9. 21. 면담보고서 3쪽.

98) 『태극단투쟁사』, 1983, 88쪽. 허○은 백석리의 고준구 등의 토지를 빼앗았다는 진술이 있다.

99) 황○○ 진술, 2006. 9. 20.

100) 이○○ 증언, 『고양시사 7권』, 2005, 410쪽.



이상의 진술을 종합할 때, 수복 초기 태극단원들이 치안대원으로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태극단원들은 금정굴 총살과정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이 부역혐의주민 감시와 호송이었다고 주장한다. 1950년 10월 9일 사건 당시 희생현장에 있었던 태극단원 이○○, 김○○은 당시 태극단원들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날 아침에 조○○ 부단장이 태극단 집합하라고 했어. 이○○이 혼시켰어요. “서장이 나한테 요구하기를 부역자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가두어 둘 수 없어서 문산경찰서(그 때 파주경찰서가 아니야)로 이동을 시켜야 하는데 경찰병력이 약하니까 태극단이 호송을 맡아 달라”그래. 태극단원들이 거의 다 갔어..”¹⁰¹⁾

“그 자체가 거기까지 인도해 준 것을 우리가 죽였다고 저 놈들이 그러는데. 우리는 죽이지 않았어요. 경찰들이 죽였지. 우리가 뭐라고 죽여. 아무리 원수 같은 놈이라도. 우리는 끌고 가서 인도만 해주었다고.”¹⁰²⁾

태극단 이○○은 태극단원들이 10월 9일 사건 이후부터는 금정굴에서의 처형을 위한 경찰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며, 그 후 유치장 관리를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 역시 태극단이 금정굴 처형에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육군 정훈국 교육이 시작된 10월 말에야 태극단이 무기를 반납했다는 이○○의 진술로 미루어보면, 그 때까지는 태극단이 처형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처형에 이르기까지 연행·감시·호송 등의 여러 방법으로 크게 조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나. 고양경찰서의 책임

금정굴사건 당시 고양경찰서의 하부조직인 각 지서 및 파출소는 희생자들의 연행과 선별 과정에 참여하였다. 각 지서는 사무실 일부를 치안대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곡물창고 등 임시유치시설을 이용하여 부역혐의자들을 감금·고문하였다. 참고인 마임순은 송포지서의 경찰관이 지서에 감금된 주민들의 손가락에 총알을 끼운 후 발로 밟는 고문 장면을 덕이리 희생자 안점봉의 처 최갑철로부터 전해 들은 바 있는데,¹⁰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부는 고양경찰서로 보내졌으며, 일부는 한강변, 심학산 등 근처에서 희생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서 및 파출소에서 이송된 부역혐의 주민들은 유치장 및 임시유치창고에 감금되어 매일 조사를 명목으로 불러나가 고문을 당하였는데, 당시 유치인의 관리와 집단총살여부는 경찰서장과 교무과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사실은 ‘진명부’라고 불린 명부에 기

101)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13쪽.

102) 김○○ 진술, 2006. 12. 15. 녹취록 10쪽.

103) 마임순 진술, 2006. 5. 22. 진술조서 6쪽.

록되었다.¹⁰⁴⁾

그 후 고양경찰서는 희생자들을 유치시설에서 금정굴로 이송하여 처형하는 과정을 주도하였는데, 이 사실은 태극단 및 여러 주민들에 의해 목격되었다. 태극단원 이순창의 진술을 신뢰한다면 1950년 10월 9일 고양경찰서 소속¹⁰⁵⁾ 경찰관 10명이 금정굴에서의 총살을 직접 집행한 것이 분명하며, 10월 중순 고양경찰서에 복귀한 경찰관 김○○의 진술로 보아 고양경찰서에 의한 집단총살은 10월 9일부터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 사건에 개입한 11월 2일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개입과 사건의 중단

금정굴에서의 처형은 11월 2일 중단되는데, 그것은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개입에 해서였다.¹⁰⁶⁾ 합동수사본부가 금정굴사건을 알게 된 것은 일부 희생자 유족의 진정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신청인 어분순은 희생자 한창석의 유족 중 누군가가 지인을 통해 각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여 결국 치안대 2명이 사형당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¹⁰⁷⁾

고양경찰서 유치장 담당 순경 정○○은 근무 중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나온 수사관들이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무주임 등 경찰관과 이○○ 등 치안대원들을 체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으며, 바로 그 시점부터 금정굴에서의 총살이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정○○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서)길 건너가 유치장이었는데 출입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CIC인가 어떤 자들이 와서 나를 보더니 들어간다는 거야. “새끼야, 비켜”하면서 들어가는 거야. 군경합동수사본부

104)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위 정○○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창고에 있던 사람들은 한 번 취조해, 두 번 취조해, 세 번 취조해, 평한 사람들(처형당한 사람들을 말함)은 다 취조당한 사람들이예요. 교무과장하고 서장이 아니면 아무나 출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사과장, 교무과장, 서장이 죽인거지요. 서장이나 수사과장, 교무과장이 ‘조사하겠습니다’하는데 도장을 찍어주어야 내 주지 아무나 내 주지 못해요. (그 명단을) 진명부라고 했어요.”(고양경찰서 유치장 담당 순경 정○○ 증언, 2006. 3. 12. 녹취.)

105) 참고인 이○○은 고양경찰서의 부역협이자 이송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따라갔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고양경찰서 소속이 아닌 경찰이 집단총살을 집행했다는 증언을 접한 바 없다. 그러나 비록 타 경찰서 소속의 경찰관이 집단총살을 했더라도 이는 그 치안책임이 당해 지역 경찰서에 있을 것이므로 책임소재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106)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1950년 10월 4일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와 함께 계엄사령관의 지휘 하에 설치되어 부역자검거 및 처리를 전담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여 10월 20일까지 8천여 건의 사건을 심사·처리하기도 하였으며, 1951년 5월 24일 해체되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64쪽; 『동아일보』, 1950. 10. 22., 1951. 1. 15.) 당시 부역자를 다루는 군법회의로 이호(李濤)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계엄고등군법회의와 육군본부 법무감실이 관장하는 육군중앙고등군법회의가 있었는데,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어오는 중요한 부역자들은 대부분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재판을 했으며 육본군법회의에서도 상당수의 부역자를 재판했다.(양정수(당시 육본 법무감 대령) 『민족의 증언 3』, 중앙일보사, 1972. 49쪽.) 이러한 활동결과 검거인원 153,825명, 자수인원 397,080명으로 모두 550,905명을 검거·처리하였는데 이들 중 인민군 1,448명, 중공군 28명, 유격대 9,979명, 노동당원 7,661명 등 모두 19,116명을 제외하고는 대개 강압으로 부역이 부역한 자였다.(『경찰10년사』, 내무부치안국, 1958. 267쪽.)

107) 어분순 진술, 2006. 5. 8. 진술조서 3~4쪽.



라고, 서장은 나가고 없었어. 이○○라고 치안대장 잡혀갔어. 빨갱이 한 사람이 빨갱이지 자식이 빨갱이냐고 하면서 잡아갔어. 차로 하나 실고 갔어. 합동수사본부에서 잡아가지 않았으면 많이 죽었을거야. 야간에 금정굴에서 빵하던 일도 더 이상 없었고 빼앗아 온 물건도 다 돌려주고.....”¹⁰⁸⁾

증언에서 언급된 이○○는 ‘1950년 12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선고 형공 제1838호사건 판결문’의 이○○임이 분명한데, 따라서 이○○를 비롯한 조○○, 이○○, 조○○, 이○○ 등이 부역자 불법처형혐의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이○○는 『특별조치령』위반으로 1950년 12월 22일 서울지방법원 판사 강봉제로부터 사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구형무소에서 집행되었다고 하나 『대구교도소 재감인명부(1950, 1951)』와 『대구교도소 군예치인명부(1951)』에는 재감 및 형집행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을 종합할 때, 민간인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50년 11월 2일¹⁰⁹⁾ 고양경찰서를 급습하여 이○○, 조○○ 등 치안대원들과 몇 명의 경찰들을 연행해 갔다. 당시 고양경찰서장으로서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였던 이무영 서장은 경찰서를 떠나 있어 그 자리에서의 체포를 피한 사실이 확인된다. 1951년 1월 25일 이무영 서장이 징계면직 당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을 이유로 면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정굴 사건을 지휘한 경찰들에 대한 연행·처벌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연행된 치안대원에 대한 처벌이유가 부역행위였음으로 보아 위 치안대원들은 경찰주도의 불법처형을 은폐하기 위한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높다.¹¹⁰⁾ 그 이후 금정굴에서의 학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해서 수복 이후 금정굴사건 중단시까지의 상황과 가해의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2>와 같다.

108) 정○○ 증언, 2006. 3. 12. 녹취.

109) 11월 2일은 김○○수용자신분장의 구속일이며 이○○, 피○○의 구속일은 11월 3일이다.

110) 이와 유사한 의혹사례로 1950년 11월 25일 240여 명이 체포된 ‘대한타공결사대’사건, 1950년 12월 6일 30여 명이 체포된 ‘대한민국의용군화랑대’사건이 있다.

〈표 12〉 고양 금정굴 사건 경과

[날짜]	[내용]	[특징]
1950. 6.28.	○ 인민군 고양·파주지역 점령 ○ 인민위원회 선거, 토지개혁, 의용군 징집	인민군 치하
9.20.	○ UN군 인천상륙작전 후 김포를 통해 고양 상륙 ○ 태극단 등 우익단체원들 희생 ○ 적극 부역자 도피 또는 월북시도	교전상황
9.28.	○ UN군, 일산지역 수복 ○ 고양경찰서 석○○ 경위 복귀 ○ 일부 군인들에 의한 부역혐의자 즉결 처형 ○ 치안대활동 및 보복시작 ○ 무차별적 부역자 연행, 일부 즉결 총살	치안혼란
10. 3.	○ 고양경찰서 복귀 ○ 고양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부역혐의자 인계 ○ 소극부역자 및 가족에 대한 본격적 연행 ○ 고문을 통한 부역혐의자 행방 및 부역혐의 조사	고양경찰서 치안주도
10. 9.	○ 고양경찰서 연행자 금정굴 집단처형 ○ 부역혐의자 연행을 계속 함	금정굴사건
11. 2.	○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개입 ○ 태극단 무기 반납	계엄사령부의 지휘

라. 사건의 은폐·조작

1) 집단총살행위의 은폐 기도

가해측이 금정굴 사건을 숨기려는 기도는 사건 초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양경찰서측은 임시유치장에서부터 처형의도를 숨기고서 이송작업을 하였는데, 그 결과로 사건의 초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희생자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이송되는 줄 알고 있었으며¹¹¹⁾ 호송작업에 참여한 태극단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또 다른 희생자의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갔으니 더 이상 밥을 가져오지 마라’는 말로 희생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¹¹²⁾

111) 이의모 진술, 2006. 5. 4. 진술조서 4쪽; 송기순 진술, 2006. 5. 25. 진술조서 4쪽; 김동환 진술, 2006. 7. 22. 진술조서 4쪽; 박화송 진술, 2006. 6. 9. 진술조서 5쪽.

112) 고준일 진술, 2006. 5. 26. 진술조서 5쪽; 김용성 진술, 2006. 5. 30. 진술조서 5쪽; 심재서 진술, 2006. 5. 31. 진술조서 5쪽.



이러한 기도는 금정굴로의 이송 중에서도 드러난다. 금정굴로 끌려가는 행렬이 곧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진 후부터 고양경찰서측은 금정굴로의 이송경로를 바꾸어 끌고 갔으며, 이송 중에도 다른 주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¹¹³⁾

2) 시신수습의 방해

김상용으로부터 부친(희생자 이봉린)의 처형사실을 알게 된 이병순은 삼촌 이삼린과 마을 주민 등 7명과 함께 밧줄과 사다리, 마차 바를 가지고 금정굴로 가 굴안까지 들어갔으나, 부친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생존자 이정선을 구해내는데 그쳤다. 오후 1시 경 금정굴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 뒤를 치안대들이 쫓아 왔으며, 오후 3시경 고양경찰서 형사부장과 치안대들이 이삼린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팻감용 나무등치 속을 대검으로 찌시면서 “시체 내 놓으라”고 했고, 형사부장은 공포를 2~3발 쏘기도 하였다.¹¹⁴⁾

3) 이무영 고양경찰서장의 지휘책임 은폐기도

1950년 11월 이무영 서장은 금정굴에서의 집단총살사건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태극단장 이○○에게 이 사건을 태극단이 저지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¹¹⁵⁾

4) 이무영 경감의 고양경찰서 근무사실 조작의혹

1950년 10월 경 이무영 경감의 고양경찰서장 근무 사실은 신청인들 및 각 참고인들의 진술·『경찰관 신분카드』·고양경찰서 홈페이지·『고양군지』(1987년)·『고양시사』(2005년)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며, 내무부치안국에서 경찰관련 모든 역사적 사실과 업적을 종합하여 1958년 발간한 『경찰 10년사』 565쪽에서는 1950년 10월 3일부터 1950년 11월 5일까지 고양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①경기도경찰청의 『경감이상 사령부(1950~1967)』에서는 경감 이무영이 김포경찰서에서 인천수상서보안계장으로 바로 발령받았다고 하여 고양경찰서 근무사실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②경기경찰국 『연혁사』 김포경찰서편에서는 경감 이무영의 고양경찰서로의 이동일이 1949년 9월 24일로 전임자 이근갑의 이임일 1950년 8월 1일보다 빠르고, ③경기경찰국

113) 당시 일산리에 살면서 이송과정을 목격한 참고인 김병순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애 엄마(희생자 김광제의 처)하고 목화를 따고 있는데 아 옆드리라고 소리소리 질러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주옥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 길로, 오니까 쳐다도 못 보고 누가 거기 끼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목화를 따고 있는데 고개를 들지 말라고 공포를 쏘고 야단이야. 쳐다도 못 보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김병순 진술, 2006. 11. 15. 녹취록 2쪽.)

114) 이병순 진술, 2006. 5. 25. 진술조서 9쪽.

115) 사건 당시 태극단장이었던 이○○은 1999년 경기도의회에서 “중앙에서 금정굴조사가 내려오자 이무영 서장이 우리 태극단 간부에게 찾아와 그 사건을 태극단이 한 걸로 해 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 들어와 내가 거절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三歲	癸卯	西二八三年	二月二十五日	西二八三年一〇月	三百六十八日
四歲	壬辰	西二八三年一〇月	三百四十八日	西二八三年一月	三百一十八日
五歲	癸巳	西二八三年一月	三百三十三日	西二八三年二月	三百零三日
六歲	甲午	西二八三年二月	三百一十八日	西二八三年三月	二百九十八日
七歲	乙未	西二八三年三月	三百零三日	西二八三年四月	二百八十三日
八歲	丙申	西二八三年四月	二百八十八日	西二八三年五月	二百六十八日
九歲	丁酉	西二八三年五月	二百七十三日	西二八三年六月	二百五十三日
十歲	戊戌	西二八三年六月	二百五十八日	西二八三年七月	二百三十八日
十一歲	己亥	西二八三年七月	二百四十三日	西二八三年八月	二百二十三
十二歲	庚子	西二八三年八月	二百二十八日	西二八三年九月	二百零八日
十三歲	辛丑	西二八三年九月	二百一十三日	西二八三年十月	一百九十三日
十四歲	壬寅	西二八三年十月	二百二十八日	西二八三年十一月	一百七十八日
十五歲	癸卯	西二八三年十一月	二百一十三日	西二八三年十二月	一百六十三日

九		六	五	四	三	二	一
子 子時 夜半	丑 丑時 夜半後	寅 寅時 夜半前	卯 卯時 夜半前	辰 辰時 夜半前	巳 巳時 夜半前	午 午時 夜半前	未 未時 夜半前
申 申時 夜半前	酉 酉時 夜半前	戌 戌時 夜半前	亥 亥時 夜半前	子 子時 夜半前	丑 丑時 夜半前	寅 寅時 夜半前	卯 卯時 夜半前
辰 辰時 夜半前	巳 巳時 夜半前	午 午時 夜半前	未 未時 夜半前	申 申時 夜半前	酉 酉時 夜半前	戌 戌時 夜半前	亥 亥時 夜半前

[illegible]

〈연혁사 고양서〉

116) 2006. 7. 19. 경기경찰청의 인사기록담당자는 조사관에게 전쟁기간 중 상당한 자료가 소실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소실된 자료



이상을 종합하면, 「사령부」에서는 이무영 경감의 고양경찰서장 근무기록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며, 「연혁사」에서는 이무영 경감의 고양경찰서장의 근무연도, 김포경찰서장 근무연도에서 후임자가 전임자보다 빨리 발령받는 모순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는 오기보다는 고의로 일괄하여 조작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작과 이무영 서장의 금정굴 사건 지휘책임 은폐기도와와의 구체적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마. 소결

국군 수복 후 경기 이북 여러 지역에서 그러하였듯이 고양지역에서도 치안대가 구성되어 활동하였다. 치안대는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태극단원 등 우익청년단체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복 전후 부역자 연행·감금활동을 하였으며, 고양경찰서의 복귀직후부터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아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각 리마다 조직되어 자체 사무실과 유치시설을 가지고 있었다.

태극단은 UN군이 고양·파주지역에 진주하자 고양경찰서 직할파출소에 본부를 두고 먼저 부역혐의자들을 연행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일부 단원들은 수복 직후 태극단이 정비되기 전부터 개별적으로 치안대에 속하여 부역자 연행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수색지역의 태극단원들이 치안대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일산리의 태극단원들은 부역혐의자 연행, 고양경찰서 유치장과 유치창고의 감시활동, 희생자들의 금정굴 이송 시 호위 등 치안대로서 활동하였다.

국군 수복 후 고양경찰서 및 각 지서에는 수복과정에서 치안대·태극단에 의해 이미 연행·감금되어 있던 부역혐의자들이 있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은 구금자를 한 사람씩 불러내어 부역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들에게 고문을 가하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하였다. 그 후 고양경찰서는 그 중 극소수만 풀어준 후 10월 9일부터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개입한 11월 2일까지 이들을 금정굴로 끌고 가 직접 총살을 집행했다. 이때 치안대·태극단은 희생자들의 연행·이송과정에서 경찰의 보조역할로 참여했는데, 이들이 총살현장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고양경찰서의 지휘와 치안대·태극단의 보조에 의해 저질러진 금정굴 집단희생 사건은 부역자 색출과 처벌을 위해 조직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개입에 의해 중단되었다.

고양경찰서 측은 금정굴에서의 집단총살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고 은밀히 진행시키려는 용의주도함도 보였으나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고양경찰서장은 사건의 지휘책임을 숨기기

의 내역과 복구여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인사기록의 소실 및 재작성여부, 일부내용의 부정확성의 원인규명여부도 밝히기 어렵다고 한 바 있다.

위해 태극단이 한 것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고양경찰서장 이무영 경감의 근무사실에 대한 조작흔적도 있는데, 이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5. 가해의 책임, 지휘·명령체계와 적법성 여부

가. 가해의 지휘·명령체계와 책임소재

태극단장이었던 이○○은 1999년 경기도의회에서 1950년 11월 “중앙에서 금정굴조사가 내려오자 이무영 서장이 우리 태극단 간부에게 찾아와 그 사건을 태극단이 한 걸로 해 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이 들어와 내가 거절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그의 진술을 신뢰한다면 이것은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이무영 서장이 지휘했으며, 또한 이무영 서장이 금정굴 사건에 대한 지휘·명령책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양경찰서 순경이었던 김○○은 사건 당시 이무영 고양경찰서장이 조회 중 권총을 쏘 정도로 포악했으며, 당시에는 서장의 말이 대통령보다도 강했으므로 총살지시는 서장이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며, 서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기관은 경기도경찰국으로서 당시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경기도까지 관리를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⁷⁾

기록을 통해 볼 때, 고양경찰서 이무영 서장은 김포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10월 3일 복귀하는 고양경찰서의 서장으로 취임하여¹¹⁸⁾ 같은 해 11월 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모든 참고인들의 진술과 『태극단투쟁사』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고양경찰서의 복귀시기가 10월 초였다는 사실은 경기도경찰국 『사령부 순경급(1950년)』 1950년 10월 4일 발령사실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고양경찰서 측은 『직원명부』를 근거로 이무영 서장의 임명일이 10월 13일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스스로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¹¹⁹⁾ 이는 경기도경찰국의 『사령부』 및 『연혁사』의 이무영 서장 근무기록과도 큰 차이가 있어 세 기록 모두 신뢰하기 어렵다.

주요 신청인·참고인들은 당시 고양경찰서 근무 경찰관 중 서장 경감 이무영, 외근경위 석○○, 능곡지서 경위 이○○, 사찰계 순경 김○○, 외근 순경 최○○, 경무계 순경 유○○, 사찰계 순경 방○○, 순경 박○○, 능곡지서 순경 민○○, 벽제지서 순경 나○○ 등을 기억하

117) 김○○ 진술, 2007. 5. 10. 진술조서 9쪽.

118) 『경찰10년사』, 내부부치안국, 1958. 이무영 서장의 부임일에 대해 고양경찰서는 1999년 경기도의회 제출자료에서 1950년 10월 12일이라고 하였으나, 현재는 같은 해 10월 13일이라고 수정하였다. 그 근거로 제출한 ‘직원명부’에는 1950년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119) 고양경찰서 발송공문, 「이무영 4대 고양경찰서장 재임기간 근거자료 송부」, 2006. 8. 24.



고 있었다.

고양경찰서의 석○○ 경위, 천○○ 순경 등은 1950년 8월경 미해병 제1사단 5연대에 배속되었으며, 일부는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여 고양·파주지역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위 석○○은 1950년 9월 28일경 고양경찰서의 공식복귀 전까지 태극단원들에게 일산지역의 치안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²⁰⁾

당시 고양경찰서는 하부 지역조직인 지서는 물론 각 리의 치안대를 관리하였다. 순경이었던 정○○은 담당구역을 맡아 구역 내 치안대 사무실을 정기적으로 감독한 사실, 치안대 사무실에서의 가혹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중단시켰던 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다.¹²¹⁾

태극단 역시 고양경찰서 복귀 일인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고양경찰서로부터 직·간접적인¹²²⁾ 지휘를 받아 치안활동을 한 사실, M1소총 등 무기를 소지했던 사실이 확인된다. 태극단은 국방부 정훈국 교육을 위해 무기 반납을 시작한 10월 말경까지도 치안활동의 일부를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은 10월 9일 경찰의 학살현장을 목격한 참고인 이○○이 고양경찰서장 이무영의 태극단 지휘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이다.

“(경찰관) 다섯 중에 하나가 지휘를 했는데, 경찰관이 한 10여 명 따라 갔을거야. 저희들도 교대해 가지고 죽였지.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그 날 꼭○○이가 따라갔다고, 그 날 저녁에 꼭○○이가 “문산이 무슨 문산이야. 거기서 다 죽였다”, 간부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이제 경찰지시 안 받자. 이무영 지휘 안 받자”고 그 때부터 결의한 거예요”¹²³⁾

경찰서장이 총살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위 김○○의 진술, 치안대 전체를 관리한 자는 경찰서장이었다는 위 정○○의 진술, 처형을 명령하고 지휘할 수 있는 당시의 공식적인 위치는 고양경찰서장 밖에 없다는 정황적 사실¹²⁴⁾, 고양경찰서장이 학살의 책임을 태극단이 한 것으로 해 달라던 진술, 경기도경 『사령부』의 ‘1951. 1. 25. 비상시 경찰관 특별징계

120) 출처, 각 경찰관 신분카드, 『태극단투쟁사』, 1983, 55쪽. 『태극단투쟁사』에는 위 석○○이 미해병대 임시대위로서 일산의 치안권을 태극단에게 위임했다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이○○ 등은 과장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단장 역시 위임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치안권의 위임’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태극단이 고양경찰서에 인접한 직할파출소를 사무실로 썼다는 사실로 보아 일산지역에 있어 당시 치안활동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121) 이에 대해 정○○은 “치안대사무실을 순행을 해달라고 해서, 민순경(농곡지서 민○○ 순경으로 추정)인가하고 나하고 셋이서 산염(마을)에 나갔어요, ‘사람살리라’는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치안대사무실이야, 물 한 그릇만 얻어 먹읍시다하면서 물 뜨러간 사이에 뛰어 들어갔어. 현병도 아닌 것들이 별안간 직위가 주어지면..... 여자를 빨개 벗겨놓고서는 무진장 때렸어. 나뭇대기로 콕콕 찔렀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네가 뭘때 때렸냐고 붙잡아 갔어”라고 하였다. (정○○ 증언, 2006. 3. 12, 녹취록 6쪽.)

122) 구산리 태극단원 이○○은 고양경찰서 송포지서장이 아니라 태극단장 이○○의 지휘를 받아 치안대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로 보아 고양경찰서가 태극단장을 통해 태극단을 지휘한 경우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123) 이○○ 진술, 2006. 12. 12, 녹취록 13~14쪽.

124) 순경이었던 김○○은 사건 당시 서장의 지위는 대통령의 지위나 같았다고 진술하였다.(2007. 5. 10, 진술조서 9쪽.)

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이무영 고양서장이 면직¹²⁵⁾된 사실¹²⁵⁾ 등을 종합할 때 고양경찰서장이 고양 금정굴사건을 직접 명령하고 지휘하였으며, 치안대와 태극단이 경찰 보조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양경찰서가 당시 전시 계엄령하에서는 경인지구 계엄사령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지만, 동 계엄사령부가 금정굴 사건을 애초부터 인지하고 묵인하였는지, 그리고 이무영 서장이 단독으로 집단총살결정을 내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적법성 여부

1) 사건 당시의 법적 상황과 불법성의 확인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었다. 비록 당시가 수복과정의 극히 혼란한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군과 경찰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법적 공백상태는 아니었다. 제헌헌법, 구 형사소송법, 미군정 법령, 구형법, 건국 후 대한민국법령과 국제법으로서의 전쟁법¹²⁶⁾ 등이 사건 당시 실정법으로서 범법자 처벌과 관련하여 발효되고 있었다.¹²⁷⁾

앞에서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것처럼 희생자들을 모두 부역혐의자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만약 그들 일부에게 약간의 부역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부역혐의자의 처벌에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는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125) 3조1항은 “국가공무원법 제45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위가 있을 때”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 1호는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소위가 있을 때”이다.

126) 자국민에게도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관습법으로서의 국제인도법원칙(강행규범적 성격)

- 인도주의원칙 : 공격은 군사적 목표에만 가해져서 민간인이나 민간 물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 구별의 원칙 : 공격은 군사적 목표에만 가해져서 민간인이나 민간 물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
- 비례의 원칙 : 민간인의 희생을 동반하는 공격의 경우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의 피해가 군사적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 군사적 필요의 원칙 : 군사력은 합법적인 군사적 필요를 얻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나) 조약

-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46조 (생명존중의무)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와 제16조.
- 조약의 경우, 전자는 국제관습법적 성격에 의해, 후자는 한국전쟁 당사자간의 공식적인 준수선언에 적용가능하며 이행의 문제는 있지만 불법성에 대한 지적은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법학자의 공통된 의견이다. 근거로는 국제적십자사(ICRC) 주석서 뿐만아니라 “협약에 관한 일고찰” ; 제성호, “국제인도법의 자국민 적용문제” ; 이장희,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 조시현, “노근리학살사건의 국제법적 성격” 등이 있다.

127) 당시 한국에는 다양한 법령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 우선 형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의 형사 관련 법률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해 과거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법령이 그대로 존속되었고, 건국이후 제헌헌법 제100조에 의해 미군정법령과 함께 이들 법령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였다.



「특별조치령(特別措置令)」이 있었다.¹²⁸⁾ 이 법령의 위반인 경우 군사법원 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벌이 집행되도록 실제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희생자에 대해 이런 법적 절차를 적용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부역혐의만으로 비(非)교전상태에서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을 즉결 처형한 행위는 헌법상의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¹²⁹⁾과 재판을 받을 권리(제22조)를 침해한 것이다.¹³⁰⁾

국제법적으로 보면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행위는 앞에서 언급한 1907년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헤이그협약」 제46조의 생명존중의무조항과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자 제네바협약」의 제2편(주민의 일반적 보호) 제13조와 제16조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¹³¹⁾

국가의 존립목적은 인간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정의와 사회적 형평의 실현이며 국가권력은 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일차적 의무이다. 그런데도 국가권력기구인 고양경찰서가 치안대·태극단 등의 우익단체를 지휘하여 부역혐의자 또는 그 가족들을 강제동행하여 3~7일간의 불법구금을 한 사실, 구금동안 부역혐의 자백, 부역자 소재파악을 목적으로 구타, 손가락 비틀기 등의 비인간적 고문을 자행한 사실, 그리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인근 주민들의 목격을 피하면서 수직폐광굴인 금정굴로 끌고 가 비밀리에 집단학살한 사실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한다.

2) 불법성에 대한 경찰 및 정부의 인지여부

고양경찰서 측은 금정굴에서의 희생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거짓 이송작업을 했고, 주민들의 목격을 막기 위해 이송경로를 변경했으며, 위협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유족들로 하여금 현장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고, 누군가 이무영 서장의 근무사실을 조작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미 사건발생 당시부터 집단구금 및 총살행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 은폐하려

128) 이들 법의 적용이 비자발적 부역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수사단계나 재판단계에서 이들을 석방하거나 형을 감형이나 면제하도록 하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附逆行爲特別處理法)」, 「사형금지법(私刑禁止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이승만정부의 재의요구로 공포 및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던 중에 있었다. 이 법안은 12월 1일에야 공포되었다.

129) 생명권이 헌법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는 학계 및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제헌헌법상으로는 제헌헌법 제9조(신체의 자유), 제헌헌법 제28조(비규정된 기본권 존중)에서 도출가능하다.

130) 반면 처형을 집행한 경찰관과 치안대원들은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56호로 제정된 「사형(私刑)금지법」 제3조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야 하나 그 누구도 처벌 받은 사람은 없다. ‘일산 중면 양민학살사건’으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끌려간 치안대장 이○○, 조○○ 등의 죄목은 위 「사형금지법」이 아니라 「특별조치령」,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며, 위 재판에서 경찰관의 처형집행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고양경찰서의 경찰관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131)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Genocide협약(1948. 12. 9.)이 발효중이고,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국내이행입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어 앞으로 시효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주요국 제법적인 전쟁범죄,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개입한 이후 사건이 중단되었고, 처형 직전의 연행자들이 풀려났으며,¹³²⁾ 탈취된 일부 재산이 본인에게 되돌려 지고, 일부 치안대원들이 처벌을 받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고양경찰서에 의한 집단총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알게 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으나, 금정굴사건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부역혐의자 처리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은 재판을 통한 처벌¹³³⁾이었으나, 9월 17일 부역 혐의자에 대한 사적제재를 엄금한다는 조병옥 포고문,

“그러므로 일반 동포는 下記의 제반 사항을 유의,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4. 법을 超脫하는 복수행위는 엄중 처단함.

5. 강압에 의하여 적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관대히 임함. 협력자에 대한 민중의 사적 제재를 엄금함.”¹³⁴⁾

9월 17일 국회법사위의 「사형금지법」안 제출, 10월 14일 장창국 헌병사령관의 포고문,

“군경불법역산점거입주방지에 관하여 = 근간 정당한 수속없이 군경의 역산점거입주를 엄금한다. 만일 정당한 수속 없이 양도를 강요하거나 구출할 때는 곧 헌병사령부에 신고하여주기 바란다.

각 청년단체의 불법구속구타금지에 관하여 = 청년단체는 군경수사기관에 연하 협조의 임무밖에 없다. 부역 자라할지라도 불법구속하여 구타할 때 그 책임자는 물론 담당자도 엄중 처단한다.”¹³⁵⁾

132) 최진은 10월 25일에 고양경찰서 유치장으로 끌려갔으나, 총살을 안 당하고 한달만에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최진 진술, 2007. 4. 20. 녹취록.)

133) “1950. 12. 18. 미 국무부, 한국의 공산부역자 처리에 대해 주의 환기 - 공산부역자들에 대한 한국의 대량처형과 군사상황 및 부족한 수형시설에 비추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재판과 처형을 빨리 하라고 명령한 이승만의 성명에 관해 지난주의 언론 보도는 미국과 해외에서 지나친 역반응을 만들고 있다. 체포되어 투옥되고, 석방되고,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능하다면 한국이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라. 조사절차·구금방법·피의자의 권리 보호 등등. (후략)” 웹(Webb) FRUS 1950, 1,567쪽.(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9』, 638~639쪽.)

134) 「조병옥 내무부장관, 공비지역의 동포에 포고」, 1950. 9. 17. 『자료대한민국사 18』

135) 「역산불법점거 등 장헌병사령관담화발표」 『동아일보』, 1950. 10. 14.



10월 19일 시경국장 담화문.

“서울시 경찰국장 이익흥씨는 19일 관하 경찰관에게 역산가옥입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훈시를 말하였다.
요즘 역산가옥에 입주하는 자 중에는 경관의 수가 나날이 늘어난다는 비난이 있다. 우리는 먼저 전재민에게 양
보하고 군인에게 양보하자. 우리는 원칙적으로 역산에 입주치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유가족으로 부득이 입주하
여야 될 경우에는 본관에게 직접 허가를 제출키 바란다”¹³⁶⁾

1950년 12월 1일 제128회 국무회의에서 부역자처형사실에 대해 확인하라는 이승만 대통
령의 명령.

“1. 유사사항

대통령 (1) 부역자 사형처분에 관한 건

부역자 700명 일시사형 운운의 보도가 있다고 하니 기 원인과 출처를 해명하라”¹³⁷⁾

등을 종합할 때, 정부는 국군의 수복과 함께 불법적인 보복처형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하
고 있었으며, 수복 후에도 부역자처형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집단희생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여부

1950년 9월 17일 국회는 부역행위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처벌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부역
행위특별처리법」안을 제출하여 9월 29일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군·
검·경의 긴밀한 협력하에 본법 취지와 동일한 취지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검찰권
침해를 이유로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회(중앙 및 지방)의 설치를 규정한 동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전시 군·검·경의 활동에 의회의 통제 없는 독자
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의사였으며, 실제 정부는 1950년 10월 4일 계엄사령관의 지휘 하에
법률적 근거 없이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부역자검거 및 처리를 전담시켰다. 이
에 국회가 다시 11월 13일 128대 2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재가결하자 정부는 어쩔 수 없이 12
월 1일 이 법률을 공포했다. 그러나 공포 후에도 정부는 이 법을 시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
고,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는 51년 5월 24일 해제될 때까지 부역자 처리임무를 거의 독자
적으로 담당했다.¹³⁸⁾

136) 「역산은 국민과 군인에게, 경찰관 입주는 삼가라」, 『동아일보』, 1950. 10. 20.

137) 제128회 국무회의록, 1950. 12. 1.

138) 「103회 국무회의록」, 1950. 10. 19.; 박명립,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한국전쟁과 한국정치의 변화』, 64, 65쪽.

초기전쟁의 패배에 대해 군경통수권의 최고 책임자인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은 결과라며 그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는 식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¹³⁹⁾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는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인 「특별조치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대통령령은 가혹한 엄벌 위주의 긴급명령이었으며, 그 선포일 역시 실제로는 1950년 6월 28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5일로 발표하여 부역죄를 소급 적용하였다. 즉 단심으로 증거설명도 생략한 채, 전쟁전이라면 4~5년 형밖에 안될 범죄에 사형을, 2~3년 형에 무기 혹은 15년 형을 판결하였으며, 이승만의 방송과 한강인도교의 폭파로 인해 피난 또는 후퇴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잔류민·패잔병을 모두 잠재적 부역자로 의심하여 처벌한 것이었다.¹⁴⁰⁾

결국 초기 패전의 책임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인식, 부역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치령」의 가혹한 처벌규정,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공격, 외신기자들의 비인도적 처형사실 폭로에 의해 계기가 되었던 1950년 12월 23일 사면령¹⁴¹⁾으로 보아 이승만 정부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처형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불법집단처형을 집행한 경찰관과 치안대원들은 어떠한 조사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

4) 가해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제헌헌법¹⁴²⁾과 국가배상법¹⁴³⁾상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규정은 공무원집

139) 1950. 7. 20. 로버트 올리버에게 보낸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에는 “이제까지의 우리 전략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의 투자를 자극하는 대신 2~3일 안에 지원병과 보급품이 도착하는 즉시 유엔군이 전면적인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말로 국민들을 무지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안심한 국민들은 스스로 국토방위에 나서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와 마을들은 국민들이 저항에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적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라고 하였다.(로버트 올리버 지음, 황정일 옮김, 『신화에 가린 인물 이승만』, 건국대학교출판부, 2002, 323쪽.)

140) 서중석, 『이승만의 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128쪽; 재인용 유병진, 『재판관의 고민』, 서울고시학회, 1957, 22~26쪽, 재인용 서동구 역편, 『한반도 긴장과 미국』, 대한공문사, 1977, 608쪽.

141) “감형에 관한 대통령령 - 나는 대한민국 헌법제63조에 의하여 하기와 여러 법원이나 군사재판에서 판결받은 자의 감형과 미결중에 있는 수감자의 석방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사형을 받은 자는 각 개인의 표준에 의하여 감형할 것(단, 극악질자는 제외된다.), 2. 종신형이나 10년 초과판의 판결을 받은 자는 개인별로 일후의 감형을 목적으로 재심할 것, 3. 10년 이하의 형을 받은 자는 각 개인의 정세를 참조하여 석방할 것, 4. 여자죄수나 병자는 극악질의 경우라도 특별히 고려할 것, 5. 미결수에 관하여는 이상의 조건에 의하여 기소하되 사형에 해당자는 무기로, 10년 이하에 해당자는 불기소로 할 것, 6. 이상의 처리조건은 현재 법원과 군법재판소에서 판결받은 자나 법원과 군법재판소에 구속된 자에게 동일히 적용할 것, 7. 이상의 처리조건은 단기 4283년 12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동아일보』, 1950. 12. 24.)

142) 제헌헌법(1948) 제27조,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국민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할 권리가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에도 공무원은 자신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43) 제헌헌법 제27조의 이행법률인 국가배상법은 법률 제231호로 1951.9.8. 제정되어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비록 국가배상법이 이 사건이후에 제정되었지만 국가책임의 발생한다는 원칙에는 영향이 없다. 여기서는 해당 헌법조문과 비교와 성립요건을 서술하기 위해 인용하였다.



행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의 행위를 국가기관의 행위로 보며, 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고양경찰서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의 책임에 속한다. 한편 치안대 활동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치안대의 구성원들이 공무원 신분¹⁴⁴⁾은 아니지만, 치안대가 경찰직무인 치안업무를 위임¹⁴⁵⁾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로서의 국가와 감독자로서의 경찰에게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소결

희생자의 존재 사실, 금정굴에서 치안대와 경찰이 처형한 장면을 목격한 치안대원 정○○의 진술, 치안대의 관리책임이 고양경찰서에 있었다는 고양경찰서 유치장 담당 순경 정○○의 진술, 고양경찰서장 역시 사건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태극단장 이○○의 증언, 태극단은 보초를 보았고 경찰이 총살했다는 이○○의 진술, 경찰관 동료들이 집단총살에 동원되었다는 김○○의 진술을 종합할 때, 사건 당시 고양경찰서장이 금정굴에서 발생한 민간인 총살 사건을 명령, 지휘한 사실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책임은 고양경찰서에 있다. 그러나 당시 고양경찰서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던 경기도 계엄사령부가 금정굴 집단총살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어떤 구체적 지휘책임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고양경찰서는 각 치안대사무실을 순시하는 등 그 활동을 관리하였으며, 고양경찰서 직할 파출소에 본부를 두고 독자적으로 무장해서 활동한 태극단 역시 치안활동에 관한 한 고양경찰서의 직·간접적인 지휘를 받아 경찰보조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치안대와

144) 해석근거가 되는 판례들에 의하면 공무원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보는데 즉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치안대가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판례의 입장처럼 치안이라는 공무를 일시적으로 또한 사건지역에 한정되어 위임받아 활동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책임법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당시 형법상에 제194조(특수공무원 직권남용), 제195조(특수공무원 폭행, 능학)에서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거나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치안대가 공무원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또 하나가 근거가 될 수 있다. 공무원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위에서 서술한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책임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145) 법적으로도 치안대의 근거법인 「비상사태토방위령」에는 경찰로부터 허락된 무기를 휴대하고(제12조), 경찰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제13조) 체포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제10조)으로 미루어 보아 치안권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있다. 치안대라고 불리는 조직의 근거법이 「비상사태토방위령」이라는 이유는 이 방위령에서는 ‘자위대’라는 조직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법의 명칭이 알려지지 않았고 외관상으로 치안업무를 주로 하는 조직이라 알기 쉽게 ‘치안대’라고 불렀다. 그리고 당시 ‘자위대’라는 이름으로 치안활동을 한 조직은 없었고, 치안대 실제적 활동내용이 방위령상의 임무, 조직구성원, 권한, 감독지휘관계, 무기휴대, 활동방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금지법」 제3조에도 당시 치안업무에 종사하는 조직으로 자위대를 언급하고 있다. 해당조문은 다음과 같다. “전항에서 군사 또는 치안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라 함은 군인, 경찰관, 청년방위대원, 자위대원 등 군사 및 치안의 임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인원을 말한다.”

태극단도 이 사건에 간접 책임을 갖고 있다.

국제법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행위를 점령한 국가 또는 정치세력의 책임으로 보며, 고의성이 있는 희생사실은 점령국이 저지른 전쟁범죄로 취급한다. 따라서 당시 고양지역에 거주하던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후퇴한 정부가 수복지역인 고양지역 주민 중 일부를 사실상 적국의 민간인으로 여겨 부역혐의 의심만으로 집단살해한 것은 전쟁범죄의 일종이다. 그리고 인간존중, 사회적 약자 보호, 사회정의와 사회적 형평의 실현을 존 재목적으로 한 국가가 단지 적에게 협력한 혐의만으로 고양지역의 주민들을 불법구금·구타·고문·학살·은폐한 행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해당한다.

금정굴 희생자들에게 설사 부역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희생자들은 『특별조치령』에 따른 단심 재판조차 받지 못하고 부역혐의를 확인받지도 못한 채 희생당했는데, 조사결과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불법처형을 막기 위해 제정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의 사면대상자들이 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극형은 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고양경찰서측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아 그들 스스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개입사실 역시 고양경찰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승만 정부 역시 이처럼 당시에 만연했던 부역혐의자의 불법처형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초기 패전과 인민군 점령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부역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부역행위자 개인들에게 있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 부역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치령』의 가혹한 처벌규정, 이를 완화하려는 노력에 대한 공격, 대부분의 부역혐의 주민들이 학살당한 후에 내려진 사면령으로 보아 이승만 정부는 민간인의 집단희생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을 개연성이 있다.

수복과정의 혼란상황이었다고는 하나 비교전 상황에서 비무장, 무저항의 민간인이 부역혐의자로 지목되어 무차별적으로 살해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설사 부역혐의가 짙은 자라도 당시 발효되고 있던 실정법에 의해 적법절차로 처벌이 이루어져야 했으며 헌법상에 규정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생명권이 비록 전시나 계엄하일지라도 임의로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국가의 일반적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사건이 5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가해책임규명이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물증, 신청인 진술, 가해자 측의 참고인 진술, 진술간의 일치, 자료에 의해 합리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치안대 및 태극단의 보조를 받으며 경찰이 민간인인 부역혐의자를 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처형한 것은 가해자에게는 형사상의 개인책임¹⁴⁶⁾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행위를 묵인·방조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발생한다.



6. 이후 유족의 피해

가. 계속되는 생명의 위협

사건 이후에도 남은 부역혐의자들의 행방을 묻기 위한 희생자 유족의 연행과 고문이 계속되었다. 신청인인 구산리의 유족 이병희는 치안대에게 총을 맞았으나 다행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¹⁴⁷⁾ 신청인인 백석리 고준일은 행방불명된 조카들을 찾아내라며 한 달 동안 고양경찰서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으며,¹⁴⁸⁾ 이런 일은 당시 대부분의 유족들이 겪었던 일이었다.¹⁴⁹⁾

나. 가족의 해체와 고향에서의 추방

덕이리의 박현수는 부친을 금정굴사건으로 잃은 후 모친이 치안대에게 강제로 끌려가서 치안대원의 후처가 되어야 했으며, 1년 뒤에 조모가 돌아가시자 7세 때부터 고아로 지내야 했다.¹⁵⁰⁾ 일산리의 박화송 역시 살기 위해 재가한 모친을 따라 가서 성조차 바꾸고 살았으며, 군에 입대할 즈음에서야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다.¹⁵¹⁾ 행주외리 이의모는 시집간 누이에게로 가서 아직도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¹⁵²⁾ 일산리 서병규는 가해자들이 ‘빨갱이 가족’이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¹⁵³⁾ 이러한 사정은 대부분의 유족들이 지금까지 겪어 온 참혹한 고통의 한 단면이다.

살아남은 희생자 부인에 대한 성적 모욕 역시 유족들을 지역에서 떠나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산포 치안대 대장 김○○(金○○)은 희생자 노춘석의 처를 괴롭혀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

146) 가해행위를 직접한 경찰과 치안대원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가리키며, 실사 명령에 따른 행위라고 할지라도 명백히 불법명령이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고양경찰서장의 경우, 명령을 한 경우에 개인의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관할 구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찰계를 통해 부역자 처리 보고가 되었고 실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부하인 경찰(지휘책임의 관계적 요건)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지휘책임의 인지적 요건) 부하의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지휘책임의 행위적 요건) 지휘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147) 이병희 진술, 2006. 10. 24. 녹취록 4쪽.

148) 고준일 진술, 2006. 5. 26. 진술조서 6쪽.

149) “제 기억으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습시다만 노참마을 한 복판의 한옥집 대문 옆 부엌광으로 끌려갔습시다. 바닥에는 지푸라기가 깔려 있었고요, 여러 사람이 둘러싸고 그 중 한 사람이 장작으로 할머니의 양 어깨를 때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이고” 하면서 여러 번을 쓰러지셨습니다.”(유길자 진술, 2006. 7. 11. 진술조서 6쪽.); “치안대가 남은 저희 가족들을 잡아가려고 집으로 왔었습니다. ‘그 종지를 다 죽인다’고 와서 동생을 업고 있던 어머니에게 총을 겨누면서 저를 찾아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이 모여 ‘죽이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세 식구는 살아남게 되었던 겁니다.”(서영자 진술, 2006. 6. 6. 진술조서 6쪽.)

150) 박현수 진술, 2006. 5. 21. 진술조서 4~5쪽.

151) 박화송 진술, 2006. 6. 9. 진술조서 7쪽.

152) 이의모 진술, 2006. 5. 4. 진술조서 6쪽.

153) 서병규 증언, 『고양시사 7권』, 2005, 358쪽.

으며,¹⁵⁴⁾ 희생자 최재옥의 처 이경순은 희생자의 처형 후 어느 날 새벽 4~5시에 본인도 송포지소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는데, 심문내용은 빨리 재혼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억울하여 말을 안하고 있으니 “왜 말 안하나”며, “이 자식들 길러 원수 갚으려 하나. 이 주 안에 팔자 고쳐”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구타를 당하였다.¹⁵⁵⁾

다. 재산 약탈

치안대 일부는 희생자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희생자의 가재도구까지 가지고 가서 각 치안대사무실, 지서에 모아두었다. 약탈한 재산은 고양경찰서에도 상당한 양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 약탈은 동산에만 그치지 않고 집과 토지 등 부동산까지 이어졌다.

고양경찰서 유치장 담당 순경 정○○은 고양경찰서에 쌓여 있는 ‘빨갱이 재산’을 보았으며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왔다 간 후 모두 돌려주었다고 하였다. 구산리 참고인 이○○은 치안대가 주민들을 처형한 후 빈 집은 모두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으며, 토지도 상환을 받은 후 다시 팔았다고 진술하였다.¹⁵⁶⁾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고양지역에서만 발생했던 문제는 아니었다. 부천출신의 박제환 의원은 가족을 쫓아내고, 재산을 빼앗은 행위의 불법성을 당시 국회에서 지적하기도 했다.¹⁵⁷⁾

그러나 전쟁 중 월북하거나 행방불명인 부재지주 토지는 연고자 우선원칙에 따라 생존한 친인척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어야 했으며, 벽제면 공무원 이○○은 이 원칙에 따라 월북자의 토지를 시집간 딸에게 돌려 준 사실이 정의로운 일이었음을 증언¹⁵⁸⁾할 정도로 희생자 혹은 행방불명자의 재산이 연고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힘들었다. 1953년 5월 2일 고양군은 각 면장에게 부역자 자작농지 소작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벽제면은 1954년 1월 15일 보관 금액을 통지하였다. 그리고 1955년 2월 9일 부역부재자 소유의 자작농지 처분문제에 대하여 고양군수가 각 면장에게 우리나라 관습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된다.¹⁵⁹⁾

154) 심기호 진술, 2006. 6. 3. 진술조서 10~11쪽.

155) 이경순 증언, 2008. 2. 7. 녹취록 5쪽.

156) 이○○ 진술, 2006. 10. 11. 녹취록 1쪽, 6쪽.

157) “또 소위 역산이라고 해가지고 부역행위를 한 사람의 가족 혹은 기타 재산을 차압을 하고,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해서 식량도 주지 아니하고 또 농량미 같은 것도 전부 차압을 해 놓는 또는 심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족을 추출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러한 재산을 소위 역산이라고 해 가지고 또 일부권력을 갖은 사람 혹은 자위대나 이러한 간부사람들이 그 가족을 들고 재산을 상당히 이것이 불법으로 처리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경기도 부천 박제환의원, 제8회 국회임시회의속기록 제39호, 국회사무처, 1950. 10. 31.)

158) 이○○ 증언, 『고양시사 7권』, 2005. 399쪽.

159) 부재부역자 자작농지 처분에 관한 질의의 건.



이러한 부역자 재산처리문제는 당시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서 1950년 11월 10일 계엄사령부는 국회에서 역산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부역행위로써 또는 도주하여 관리가 곤란한 동산은 그 관리를 시, 군에 일임하여 보관하게 하고, 부패물이나 농작물 등은 시·군에서 환가 처분하여 특별회계로 보관하게 하며, 역산한도 내에서 부역자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⁶⁰⁾

그러나 조사결과 신청인 중 일가족이 희생당한 덕이리 안점봉, 덕이리 희생자 박만협, 일산리 희생자 김광제, 백석리 희생자 고산돌, 유해진, 행주리 희생자 이금현, 수색리 희생자 김용성 등 소유의 집과 토지 등 재산이 모두 불법적으로 분배되어, 주로 치안대 관련자들 소유가 되었다는 진술들이 있었다. 위 안점봉, 박만협, 김광제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소송이 있었다.

희생자 소유였던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덕이리 416은 희생자 안점봉 소유에서 안태직으로, 덕이리 416의 2는 양용식으로, 덕이리 441의 2와 안형노의 집이었던 덕이리 434는 1939년 8월 1일 소유자 안형노에서 1949년 1월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유병철¹⁶¹⁾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희생자 안형노의 유족들은 1949년 1월 15일에 매매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992년 11월 27일 92다 363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②유○○이 20년간의 점유로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집단희생사건의 유가족이 엄연히 생존해 있으므로 불법적으로 약탈된 희생자들의 재산과 토지는 마땅히 그들에게 돌려주었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빼앗긴 재산과 토지에 대해 유족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서류의 땅은 전쟁 때 살던 대지 250평 3필지, 분배로 넘어간 양아버지의 밭 200평입니다.

수재의 건에 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적 해석을 의뢰하였던 바 대요좌기와 같은 회보가 있다는 통첩이 유하읍 기에 첩 하오니 참고하시압기.

1. 자작농지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및 자작농지의 소유자가 행방 불명이 된 경우.(이 경우에는 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2. 자작농지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및 자작농지의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유무가 불명한 경우.(이 경우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관습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이 관습이라 함은 사자의 유산은 혈연자, 배우자, 근친, 친족, 동리의 순위로 관리 내지 소유하게 되는 것이며 상세한 것은 친족관습유산에 기재되어 있음.)
3. 부재부역자 자작농지는 제5조 제2호 나항을 적요할 바임.

160) 『동아일보』, 1950. 11. 11.

161) 희생자 안형노의 옆집인 435번지에 거주하였으며, 치안대 유○○과 같은 집안이었음.

250평 대지는 유씨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으로 지금의 로테오거리 할미마을 쪽 땅입니다. 밭 200평도 할미마을 동네 한 복판에 있었다고 합니다.”¹⁶²⁾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900평의 논을 샀는데 등기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누군가 팔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김서방네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덕이3리에 1,800평 되는 산의 소유문제로 20년 전에 소송을 했으나 1심에서는 이겼으나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살던 덕이리 1,093번지 집도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¹⁶³⁾

“다시 올라왔을 때 집안의 집과 가재도구들도 누군가에 의해 빼앗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여 년 전 즈음에 큰 맥 사촌형님이 집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했었는데, 패소했다고 합니다.”¹⁶⁴⁾

“마을에 허○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주동이 되어 사촌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사촌형이 고준수였고, 그 분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허○이란 사람이 사촌의 땅을 점유하자 어머니께서 경찰서에 이야기 하니 경찰서측에서 ‘고준수 땅을 성도 다른 김어진(진술인의 어머니)이 주장하니 안된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그 결과 허○의 점유가 계속되었고, 1980년의 특별조치법으로 허○ 소유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¹⁶⁵⁾

“아마 허○이란 사람이 우리 땅을 가져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¹⁶⁶⁾

“어머니와 나랑 둘만 있었는데 치안대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총을 겨누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안의 가재도구도 웬만한 것은 다 집어갔다고 합니다.”¹⁶⁷⁾

“(빼앗긴 땅은) 행주외리 산으로 한 3천평 정도, 큰 사거리에 1천 평의 논, 작은 사거리에 1천평, 두 너머 첫째다리에 밭이 9백평이 있었어요. 둘째 다리에 밭이 1천평이 있었습니다. 1953년에 땅까지 빼앗긴 것이 억울해서 (고향에) 찾아갔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무서워서 면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쌀 두가마니를 주었던 것입니다. 면장이 땅 경작자로부터 받은 쌀을 주는 듯 했습니다.”¹⁶⁸⁾

“피난을 나갔다가 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친정 집으로 갔어요. 십 수 년

162) 마임순 진술, 2006. 5. 22, 진술조서 8쪽.

163) 박현수 진술, 2006. 5. 21, 진술조서 7쪽.

164) 김동환 진술, 2006. 7. 22, 진술조서 5쪽.

165) 고준일 진술, 2006. 5. 26, 진술조서 7쪽.

166) 유길자 진술, 2006. 7. 11, 진술조서 6쪽.

167) 박영숙 진술, 2006. 7. 8, 진술조서 4~5쪽.

168) 이영재 진술, 2006. 8. 10, 진술조서 4쪽.



이 지나서나 돌아 가보니 다른 사람이 살면서 소유권을 넘겼던 거예요. 그 때 재판비용이 오하려 더 들어간다고 해서 못 했어요. 농지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의 것이 되었고, 아버지 김순동 명의의 땅들이 여러 사람 소유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특별조치법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금은 되찾기를 포기 했습니다.”¹⁶⁹⁾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0월 14일 장창국 헌병사령관의 포고, 10월 19일 시경국장 담화문을 통해 부역자 재산에 대한 수탈을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부역자 재산 수탈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사후 조치 역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후 부역혐의자 가족들이 빼앗겼던 가재도구 일부를 돌려주는 데에 그쳤다.

라. 신분증 발급제한부터 연좌제까지

이승만 정부는 서울시부터 “적의 잠입을 방지하고 제5열을 철저히 소탕하여 치안을 확보하고”, “시민증을 가지지 아니한 시민은 적색반동분자로서 통행에도 제한을 주기” 위해 10월 20일부터 사상불순자를 제외한 만 14세 이상 남녀에게 시민증을 발행하였으며,¹⁷⁰⁾ 경기도에 서는 11월 중에 발행하였다.¹⁷¹⁾

그 결과 부역혐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민증이 발급되지 않아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 당했으며,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함께 사는 마을 주민들의 일상적인 냉대를 넘어선 지속적인 정보기관의 감시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도민증이 없는 유족들은 친인척이 사망하더라도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었으며,¹⁷²⁾ 이러한 사정은 신청인 채봉화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¹⁷³⁾

연좌제에 의한 피해는 광범위하게 30여 년 이상 지속되면서 희생자의 유가족들을 억압하였다. 직업선택, 취업, 출국활동을 금지 당했으며 이러한 제도는 사회적으로도 희생자의 유족들을 완전히 고립시켰다.¹⁷⁴⁾ 즉 연좌제는 마을공동체와 친인척, 씨족들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희생자 유족들의 마지막 생존수단인 사회적 지원과 보호조차도 박탈하는 제도였던 것이다. 희생자 유족들은 연좌제에 따른 신원조회 때문에 사관학교 입학이나 공무

169) 김용성 진술, 2006. 5. 30. 진술조서 7쪽.

170) 『동아일보』, 1950. 10. 11., 19., 21.

171) 『동아일보』, 1950. 11. 6.

172) 이강남 진술, 2006. 11. 17. 진술조서 2쪽.

173) “이승만 박사가 도민증을 만들어 줄 때였는데, 저의 집안은 빨갱이 집안이라며 도민증을 만들어 주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하영이라고 있었는데, 서대문형무소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이 분이 그 집이 무슨 죄가 있느냐 자식들과 먹고 살아야지 않느냐며 도민증을 바로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도민증이 없으면 장사도 못할 때였습니다.”(채봉화 진술, 2006. 7. 13. 진술조서 8쪽.)

174) 그러나 이 조차도 어느 정도의 재산과 교육수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이미 가족이 해체당하고 고립되어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유족들은 여기에조차 해당되지 않았다.

원 승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¹⁷⁵⁾

마. 소결

사건이후에도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부역혐의자들의 행방을 묻기 위한 연행과 고문이 계속되었으며 한 순간에 가장과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가족이 해체당하고 고향에서의 추방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다. 희생자의 부인에 대한 치안대원들의 성적 모욕도 유족들이 고향을 떠났던 중요 이유였다.

경찰의 치안활동을 보조한 치안대원들은 희생자의 재산을 약탈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재산 약탈은 동산에 그치지 않고 집과 토지에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전쟁 중 월북하거나 행방불명인 부재지주 토지는 그 유가족의 소유권을 인정했어야 하나 이 원칙이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1992년의 대법원 판결은 희생자 소유였던 부동산을 타인이 부당하게 점유한 데 저항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이 있다.

희생자의 유족들은 1950년 10월 20일부터 시작된 신분증 발행제도 속에서 도민증을 발급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았으며, 함께 사는 마을 주민들로부터도 일상적인 냉대를 받았다. 그 후 연좌제의 제도적 굴레 속에서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V.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한국전쟁 중인 195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양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고양시 소재 금정굴에서 집단총살 당하였다.

나. 위 사건의 경위를 보면, 국군의 고양·파주지역 수복 이후, 경찰은 지역주민 중 인민군

175) “희생자들의 죽음 이후 군 정보기관에서 매 달 집으로 찾아와서 조사를 하고 가니,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대전에서 10년을 피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삼군사관학교에 합격했었는데, 신원조회에서 걸려 불합격된 일이 있었습니다.”(김상길 진술, 2006. 6. 10., 진술조서 8쪽.); “서울로 올라와서 특채로 용산구청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원조물자 때문에 통역으로 들어갔다가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서기관까지 올라갔어요. 서기관이 되니까 의용군이었던 사실이 나오고 동생이 행방불명된 사실이 알려지니 중앙정보부와 용산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사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의 승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이종민 진술, 2006. 6. 15. 진술조서 7쪽.); “공무원을 할 수 없었고, 측량기사 자격증으로 외국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하고 있는 학원도 연좌제를 피할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었습니다. 큰 시누이 아들도 육사에 진학하려다 못 했습니다.”(마임순 진술, 2006. 5. 22. 진술조서 8쪽.); “작은 애가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 애가 한양대 원자력 학과를 졸업할 때 고리 원자력 발전소로 졸업생을 싣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애를 빠트린 거예요.”(심재희 진술, 2006. 11. 29. 진술조서 7쪽.)



점령시기에 부역한 혐의가 있는 자와 부역혐의로 행불 또는 도피한 자의 가족을 연행하였다. 경찰은 이들을 관내 각 지서 및 치안대 사무실, 창고 등에 구금하였다가 고양경찰서로 이송한 다음, 3~7일간의 조사를 거쳐 10월 9일부터 한 번에 20~40여 명씩 금정굴로 끌고 가서 총살하고 암매장하였다. 이 과정에 고양경찰서 관내 경찰과 20여 명의 치안대·태극단원 등 경찰보조 인력이 가담하였다. 금정굴 현장에서는 5인 1조의 경찰관 2개 조가 희생자 5명씩을 굴 방향으로 무릎 꿇게 하고 등 뒤에서 사격하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본 사건의 전체 희생규모는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를 포함하여 최소 153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고산돌(다-253), 최의현(미신청), 유해진(다-805), 한복영(다-804), 허정임(미신청), 정한희(다-578), 정대철(다-578), 정영학(다-574), 김석권(다-806), 이봉린(다-577), 박순조(다-432), 박순환(다-432), 한창석(다-3446), 서상용(다-249), 서병철(다-249), 서병욱(다-2317), 이규봉(다-278), 이정례(다-278), 윤영규(다-2312), 안희준(다-274), 이기철(다-6521), 김광제(다-6958), 박근식(다-2313), 박인식(다-2313), 권학길(다-6269), 최종석(다-260), 박희문(다-378), 김용남(미신청), 김영선(다-2816), 전옥자(다-2816), 이돌섭(다-275), 김천홍(다-250), 김영환(다-254), 김재환(다-254), 유희철(다-252), 안점봉(다-247), 안형노(다-247), 안상노(다-247), 안용노(다-576), 이용우(다-261), 최재옥(다-259), 최연(다-258), 최담(다-258), 박만협(다-248), 조병호(다-6065), 김진섭(다-6065), 김명산(다-6782), 방용섭(다-6782), 김만성(다-6782), 김진홍(다-357), 심기만(다-279), 심우현(다-279), 심준섭(다-279), 유필준(다-277), 노인성(다-257), 심재천(다-255), 노춘석(다-256), 홍기원(다-6982), 김상국(다-280), 김호연(다-276), 서정희(다-575), 김대봉(미신청), 이봉훈(미신청), 이태우(다-7822), 이병희(다-251), 이금현(다-3429), 장기연(다-6827), 장석용(미신청), 장기철(미신청), 박중원(다-2315), 박상하(다-2315), 김순동(다-245), 정씨(다-576), 안종건(다-576), 안복례(다-576), 채기동(다-899) 등 76명이다.

라.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던 지역주민들로서, 이 중에는 북한 점령기 인민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는 등 소극적인 부역행위를 했던 사람도 일부 있으나, 상당수는 도피한 부역혐의자의 가족원 및 이와 무관한 지역주민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10대가 8명, 여성이 7명 포함되어 있었으며, 고양시 중면과 송포면의 주민들이 주로 희생되었다.

마. 본 사건의 가해 책임은 고양경찰서(서장 이무영)에 있고, 고양경찰서의 지휘를 받으며 보조역할을 수행한 치안대·태극단에도 간접책임이 있다.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은 희생자들의 연행·구금·이송 및 총살을 감독·집행하였다. 치안대는 우익단체인 대한

청년단·대동청년단·태극단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경찰의 치안보조 조직으로서 고양경찰서의 지휘 아래 있었다. 특히 태극단은 고양경찰서 직할파출소에 본부를 두고 부역협이자 연행, 고양경찰서 유치시설의 감시, 희생자들의 금정굴 처형장소 이송 등을 실행하였다. 본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일차적인 지휘·명령계통은 고양경찰서 → 경기도 경찰국 →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한편으로 전시 계엄령 하에서 경인지구 계엄사령부가 모든 상황을 통제·감독하고 있었다. 본 사건에서 이들 상급기관의 사건 인지, 묵인 및 지시 여부가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바. 고양경찰서 경찰이 희생자들을 집단 처형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확인·선별 절차나 적법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국회는 「부역행위특별처리법」·「사형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었고,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부역자 처리를 금지하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음에도 경찰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양경찰서는 본 사건 관련 희생자들을 처형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속이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수복 직후 부역자 처리를 전담하기 위해 중앙에 설치된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950년 11월 2일에 본 사건 관련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치안대원들을 체포한 직후 금정굴에서 처형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볼 때, 이승만 정부는 본 사건의 진행 중에 이미 그 위법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사. 본 사건은 부역협이자와 그 가족들을 불법으로 집단 총살한 사건이었다. 비록 사건 관련 희생자들 가운데 일부가 부역자 혹은 부역협이자였다고 할지라도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무장 민간인을 집단총살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사건 이후에도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생계의 터전인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 또한 연좌제에 따라 취업의 권리가 제한되고, 요시찰인으로 분류되어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2. 권고 또는 화해조치

가. 사과

국가는 고양 금정굴에서 비무장 민간인들이 아무런 적법절차 없이 집단희생되었으며, 그 유족들이 오랜 세월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온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한다.

나. 명예회복

정부는 희생자의 호적 등에 ‘행방불명’으로 기록되어 있거나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여 유족



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다. 재발방지

정부는 비록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라도 사법심사 없이 민간인이 임의 처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시하 비무장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수령, 군형법 등 제반 법률 내의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권고한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잘못된 기록을 수정하고, 향후 역사관련 교재에도 위의 진실규명 내용을 수록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전쟁기 고양 금정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비극과 잘못을 이후 세대가 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연구, 교육할 수 있는 고양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적극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라. 화해와 위령사업

정부는 현재 서울대병원 법의학교실에 임시 보관되어 부식되고 있는 유골·유해를 영구 봉안 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무하고, 지역민과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해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을 설립하고, 적절한 위령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